월간

재정포럼 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8년 2월호 제140호

현안분석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손원익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박노욱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 中 투자기업, 10년 안 돼 청산땐 감면받은 세금 반납해야 외

정책흐름 • 2007년 국세징수 실적 외

재정통계 • 조세체계의 변천 외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8.2_vol.140

CONTENTS |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부동산정책과 실용주의 · 전형수

현안분석
06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김우철
28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 손원익
40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 박노욱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63 中 투자기업, 10년 안 돼 청산땐 감면받은 세금 반납해야 외

정책흐름
72 2007년 국세징수 실적
75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78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81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84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87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89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재정통계
92 조세 체계의 변천 외

이슈 & 포커스
116 '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외

신간안내
125 이코노미2.0 외

월간 재정포럼 2008년 2월호 통권 제140호·라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02-2186-2130·3 **홈페이지** : www.kipf.re.kr

부동산정책과 실용주의

전형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실용주의'가 어느덧 우리와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실용주의(實用主義; Pragmatism)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으로, 관념이나 사상을 행위(行爲;Pragma)와의 관련에서 파악하는 입장'을 말한다고 하며, '행동과 경험의 중시, 실험적 · 탐구적 방법의 활용, 사회생활과의 연결 중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나온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그 동안 우리의 사회 · 경제적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및 그 적정성 여부,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논란, 개발부담금 등 각종 규제정책의 당부 등이 빈번하게 대두된 화두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투기 억제와 소득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목적세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 왔다. 참여정부 들어 2003년 10 · 29 및 2005년 8 · 3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차단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을 크게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들을 시행하게 되었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 특별대책으로 집값 안정에는 다소 기여했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위주의 무리한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일거에 총동원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하고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정책이 균형감각을 갖지 못하고, 단시간 내에 특정지역의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에만 지나치게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책의 실용성과 합리성 고려해야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의 합리성과 실용성이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모든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매우 세심하고도 현실적인 판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부동산정책의 분야별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취득 · 활용 · 양도 등 부동산에 관한 일련의 경제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만을 목표로 단시안적인 정책만 추구한 나머지 중복적인 고강도 규제만 집대성되어, 조세정책의 기본목표가 '국민들이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Compliance)' 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세금이 '폭탄' 이라는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온 가족이 여러 해 동안 살아온 사람들마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마저도 세금 때문에 제약받고 있다는 원성을 듣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세금 위주의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발상은 매우 편협된 것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의 수요 · 공급을 원활히 해나가면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금융자산 관리, 합리적인 조세정책,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상응조치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매우 세심하고도 현실적인 판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검토되어야 할 부동산정책방향

현재 논란이 많은 부동산정책에 관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의 수요공급, 특히 공급 측면에서의 적정한 관리가 긴요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일거에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비시장적인'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정책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부작용만 낳게 된다. 과거 고강도의 부동산정책 뒤에는 빠짐없이 가격폭등이 이어지곤 하던 과정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둘째, 부동산의 보유과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부담 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행 보유과세가 부동산투기 방지 성격을 강하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비롯하여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는 그 실용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정책실행 결과의 비합리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게 띠고 있음을 감안하면, 1세대가 1채의 집을 소유하고 5년, 10년 동안 살고 있다면 그 세대에게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사법인 민법의 일반원칙과도 맞지 않는 세대별 합산방식은 즉시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해야 하며, 과세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세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과세는 지방세로 통합하여 하나의 보유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도 편하고 세무행정상으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부동산 거래세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 세율 조정, 특별공제율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지나치게 무거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 등록세도 크게 인하하고 일원화하여 거래세 부담도 덜어주고 납세편의도 높여 부동산거래의 장애요인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수행방식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특히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게 되는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사 그 대상이 국민의 아주 극소수라도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일부 소수가 국가 · 사회적 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 호소가 그렇게 많은데 '세부담이 무거우면 팔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발상은 깨끗이 버려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비롯하여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는 그 실용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정책실행 결과의 비합리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서 실용성이라 함은 현실 적합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에 근거한 '방향성 있는 실용성'을 말한다.

이 '방향성 있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세금이 '폭탄' 소리를 듣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안분석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현안분석 1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wkim@kipf.re.kr)

국가경제에서 법인세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재정수입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인소득세와 더불어 법인세는 재정의 3대 주요 수입원으로 불리며, 안정적 세원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인세수의 증가가 기업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법인세제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법인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담이 일정한 가운데에서도 법인 기업 수의 증가 혹은 기업의 소득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수 대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와 같은 요인도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법인세수 증가를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법인의 평균 유효세율과 과세베이스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 항목에 대한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적한다. 또한 개별 기업 단위 이외에도 전체 법인 수의 변화와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법인세수의 증가 요인을 밝혀본다.

Ⅱ. 법인세수 및 세부담 변화 추이

1. 법인세수 변화 추이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국세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의 국세 대비 비중 1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8.5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가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는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국세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의 국세 대비 비중 1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법인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성(volatility)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의 법인세 변동성은 1980년대에 비해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법인세 징수액 및 GDP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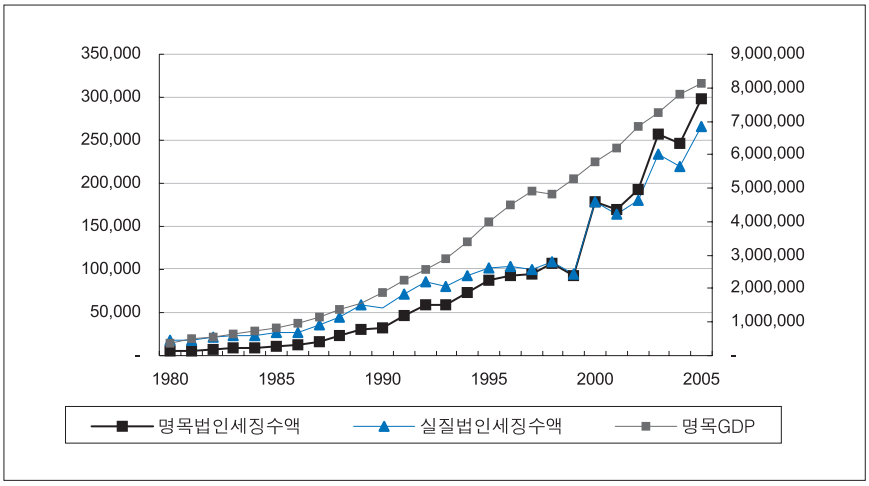

〈표 1〉 기간별 법인세 징수액 증가율의 표준편차

(단위 : %)

	전체 기간	1981～1989년	1989～1996년	1997～1999년	1999～2005년
표준편차	21.40	13.51	16.21	11.78	35.42

세부담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거시지표인 GDP와 대비시킬 때에는 경기와 보다 더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2. 법인 세부담(평균유효세율) 추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최근에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에서 법인의 세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 세부담의 일차적인 지표인 명목법인세율은 최근 약간 감소하였으나, 과표구간과 조세감면의 존재로 인해 명목세율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세부담의 변화로 해석하기엔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에서는 명목법인세율 대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나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수' 비율 등이 실질 세부담의 대용지표로 이용되곤 한다. 그러나 법인세수/GDP 비율에 사용되는 법인세 징수액은 납기 시차의 문제로 인해 GDP와 단순 비교하는 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1]. 따라서, 세부담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거시지표인 GDP와 대비시킬 때에는 경기와 보다 더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t년도의 법인세 신고액도 전년도의 귀속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t+1년도 법인세 신고액을 t년도의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더욱 타당하다. 그럼에도 GDP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구한 값을 실질적인 법인 세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개념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법인 세부담의 변화 방향과 무관하게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목세율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지라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비율이 증가하면 오히려 법인세/GDP 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이외에 법인 세부담의 변화를 보다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총계지표로서 법인세신고액/법인영업잉여, 법인세신고액/순이자소득을 반영한 법인영업잉여, 법인세신고액/법인사업소득신고액 등을 고려의 대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에서 영업잉여는 매출과 관련된 영업이익만을 반영하고 이자비용 지급과 같은 영업외수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기에, 기업회계 및 기업의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영업외수지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순이자소득을 합한 영업잉여(t)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결손처리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법인의 세부담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분모인 영업잉여는 개념적으로 흑자법인의 소득에서 모든 적자법인의 손실을 차감한 전체 기업의 순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제 이익과는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

1) t년도의 법인세 징수액은 t-1년도의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신고액에 대한 일부의 징수금액과 t연도 소득과 관련되는 중간예납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하더라도 큰 규모의 결손기업이 발생한다면 영업잉여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잠재적으로 음(–)의 소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 지표를 세부담 측정에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의 분모는 손실기업을 제외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담의 적절한 측정을 위해서는 결손기업을 제외하고 실제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소득 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2] 법인세 부담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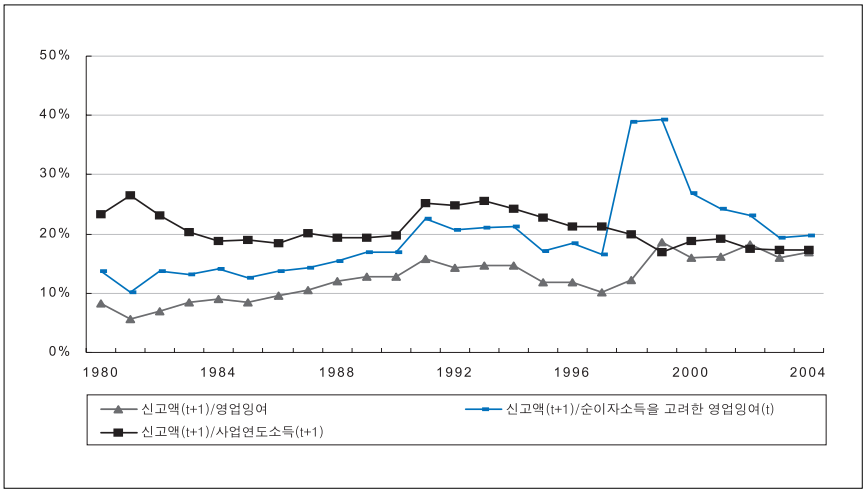

이러한 자료로는 국세청의 사업연도소득 신고자료가 가장 잘 부합한다. 또한 신고소득자료는 소득과 신고액이 동일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회계연도의 불일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연도소득(t+1) 대비 법인세 신고액(t+1) 비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기간 직후인 1999년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1997년과 1998년에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이 다음 해에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된 것 때문이다.

법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지표별로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유사한 추이를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각 지표들은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개념적으로 세부담에 가장 근접한 순이자 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율과 국세청신고 소득 대비 법인세비율은 2000년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법인의 세부담(평균유효세율)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연도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비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부담(평균유효세율) 결정 요인

총계지표에 나타난 추이만으로 평균유효세율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지표 가운데 세부담에 가장 근접한 법인의 신고소득 자료에 기초하여 평균유효세율의 결정 요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인세는 우선 사업연도소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후 공제 및 감면세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차감해 주어 최종적인 법인세가 도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평균유효세율(AETR)과 평균법정세율(ANTR)에 대해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R=AETR+(L\times ANTR)+(N\times ANTR)+(D\times ANTR)+E$$

단, AETR=평균유효세율=법인세 신고액/사업연도소득,
L=이월결손금/사업연도소득,
N=비과세소득/사업연도소득,
D=소득공제/사업연도소득
AETR=평균법정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E=감면 및 공제세액/사업연도소득

위의 식을 통하여 이월결손 또는 각 감면제도가 평균법정세율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함으로써 각 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에서 평균유효세율(AETR)은 평균법정세율(ANTR)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양자간에 안정적이고 장기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조세감면의 존재로 인해 법정세율의 변화 방향이 평균유효세율의 변화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조세감면율의 안정성으로 인해 법정세율의 변화는 방향과 크기 면에서 평균유효세율의 변화로 일정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평균법정세율 대비 각 요인별 세율인하 효과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반면, 최근에는 이월결손제도의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했던 결손이 최근까지 이월결손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는 최근에 거의 무시될 정도로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균유효세

율을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법정세율의 인하와 이월결손 공제금액의 증가가 외환위기 이후 평균유효세율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을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명목세율의 인하와 이월결손 공제금액의 증가가 외환위기 이후 평균유효세율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각 제도의 세율인하 효과: 평균명목세율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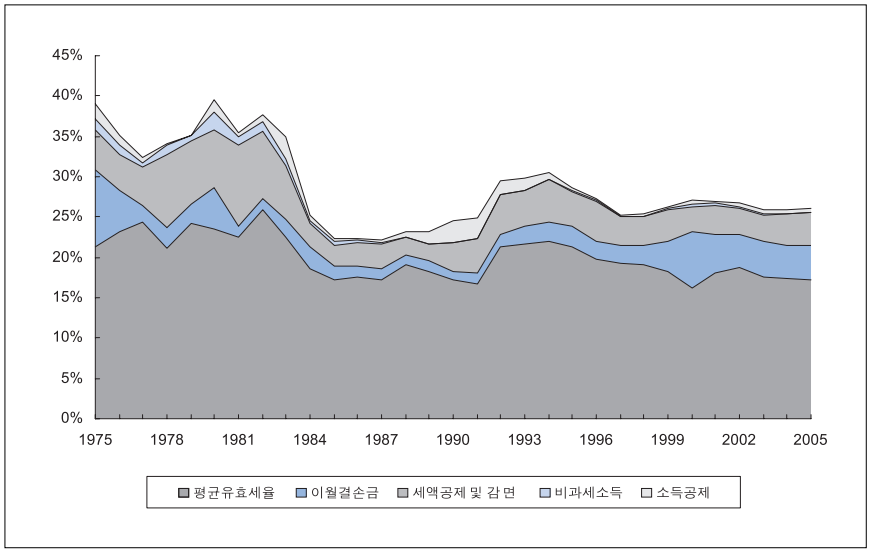

총계지표상에 나타난 법인의 소득은 공통적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여주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Ⅲ. 법인의 소득 변화 분석

1. 법인소득 변화추이

총계지표인 영업잉여, 사업연도소득, 기업경영분석상의 경상이익의 추이를 아래의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총계지표상에 나타난 법인의 소득은 공통적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여주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림 4] 총계지표상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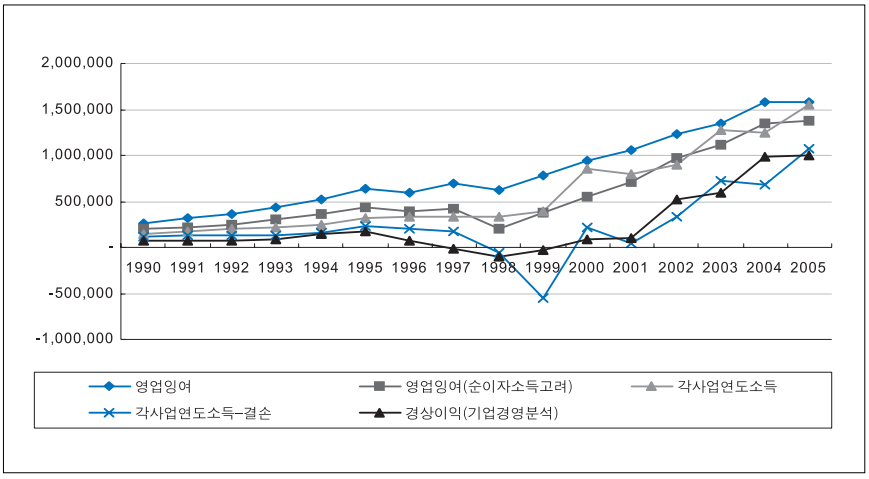

총계지표상에 나타난 외환위기 전후 소득증가의 원인을 밝혀 보기 위하여 개별기업 재무자료[2]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별 기업 재무자료에서는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의 원천을 영업과 비영업 활동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기업 자료에 나타난 법인 소득의 추이를 보면, 흑자기업의 경우 높은 경상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평균 4.34%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7.95%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상이익률을 영업이익률과 영업외손익률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영업이익률은 약간 증가한 반면 영업외수익률은 매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상이익의 증가는 대부분 영업외수익의 증가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적자기업의 경우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

2)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value를 통해,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변수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이 missing인 데이터는 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경상이익이 음(-)인지 양(+)인지를 기준으로 적자기업과 흑자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에는 총 14,430개의 기업의 정보가 활용되었으며, 1990년에는 단지 2,805개의 기업에 대한 정보만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Kis-Value가 2006년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 적자 수준이 더욱 확대되는 추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평균 −7.92% 수준이었던 경상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평균 −13.52%로 약 2배 정도 확대되었다. 적자폭 확대의 주된 이유는 영업이익률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흑자기업의 경상이익률 증가가 대부분 영업외손익률 확대였던 사실과 대조된다. 영업외손익률은 외환위기 중 초래하였던 큰 폭의 손실을 이후 서서히 회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의 차이점은 결국 흑자기업의 영업외손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어 경상이익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된 반면, 적자기업의 영업외손익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기간에 평균 −7.92% 수준이었던 경상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평균 −13.52%로 약 2배 정도 확대되었다.

[그림 5]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외손익률

〈흑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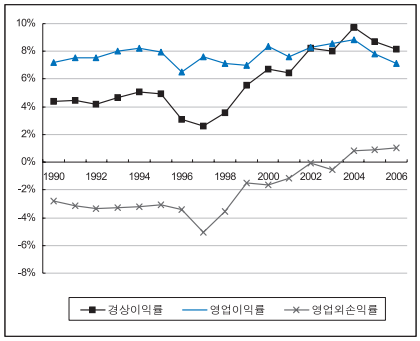

〈적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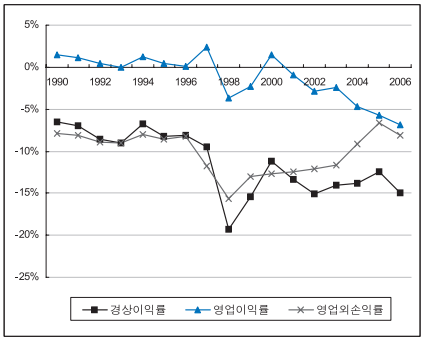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의 차이를 야기한 영업외손익은 이자비용 및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래의 [그림 6]에서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흑자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2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130% 수준으로 점점 하락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적자기업의 부채비율은 흑자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추이를 보여준다. 1994년에는 무려 1,200%까지 이르렀다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약 35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평균 부채비율이 적자기업은 흑자기업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모두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자율은 흑자기업에서는 감소하고 적자기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6] 부채 비율 및 부채대비 이자비용 비율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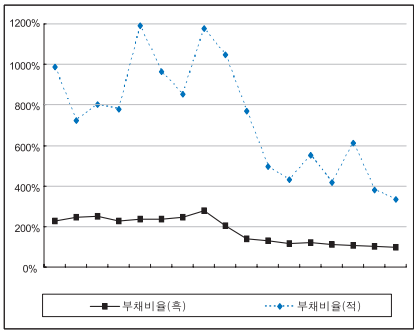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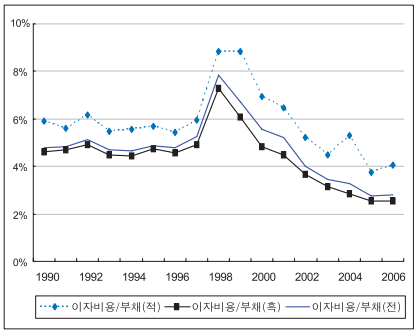

이자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자비용을 부채비율로 나눈 수치를 이자율로 사용하였다[3]. 흑자기업의 이자율은 외환위기 이전기간 동안에 평균 4.63%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3.56% 수준으로 약 25% 하락하였다. 적자기업의 이자율은 외환위기 이전 5.62%에서 외환위기 이후 5.73%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자부담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모두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자율은 흑자기업에서 감소하고 적자기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법인소득 변화 분석

가. 경상이익률과 재무구조 개선: 패널회귀분석

앞 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소득 증가가 부채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차입이자율의 하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총계자료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추론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성립할지는 실제의 개별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평가의 개별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상이익률 변화가 부채비율과 차입이자율의 변화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단, 분석의 편의를 위

3) 이자부담과 관련된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융부채를 이자율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자비용을 총부채로 나눈 수치를 활용했다. 따라서 이 이자율을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총 부채에는 금융부채 이외에도 이자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충당부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당성부채의 규모는 특성상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자율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해 분석대상은 상장기업 자료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먼저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전체 분석대상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세 기간[4]으로 분리하여, 각 개별 기간 동안 3개년 이상 관측치를 보이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각 기간 동안 개별 기업의 경상이익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매출액 증가율, 노동-자본비율(자산 대비 인건비 비율)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다음의 회귀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 1은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모형[5]이고, 회귀분석 2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랜덤효과 패널회귀분석 모형이다. 패널회귀분석모형의 추정에는 일반최소자승법(GLS)이 이용되었다. 회귀분석 3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더미변수(D1)가 모형에 추가되었고, 회귀분석4는 산업구분(D2) 더미변수까지 고려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소득 증가가 부채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차입이자율의 하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패널회귀 모형

$$OR_{i,t} = \alpha + \beta DR_{i,t} + \gamma IR_{i,t} + \delta SGR_{i,t} + \eta KLR_{i,t} + \Theta D_1 + \mu D_2 + \varepsilon_{i,t}$$

변수의 정의

AETR: 기간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기간, =3, 외환위기 이후)
OR: 경상이익률
DR: 자산 대비 부채 비율
IR: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SGR: 매출액증가율
KLR: 자산대비 인건비 비율
D1: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더미변수 (대기업=1)
D2: 산업구분 더미변수(각산업)
산업구분: I2-전기가스업, I3-건설업, I4-도소매업, I5-운수업, I6-통신업, I7-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I8-오락등 문화산업, I9-금융업, I10-기타산업

4) 1기(외환위기 전): 1990년~1996년
2기(외환위기 중): 1997년~1998년
3기(외환위기 후): 1999년~2006년
샘플기간을 3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데에는 샘플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신평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샘플링의 문제는 자료상의 한계로 남겨둔다.

5) 회사의 관측되지 않는 요소들인 생산성, 기술력, 경영능력 등의 차이로 인해 고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이자율은 모두 경상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의 추정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패널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1 (Fixed Effect)	회귀분석 2 (Random Effect)	회귀분석 3 (Random Effect)	회귀분석 4 (Random Effect)
Cons.	0.221 (17.56)***	0.263 (−26.87)***	0.257 (25.22)***	0.264 (25.71)***
DR (부채/자산비율)	−0.137 (−6.90)***	−0.199 (−14.26)***	−0.201 (−14.39)***	−0.202 (−14.29)***
IR (이자비용/부채비율)	−2.277 (−19.97)***	−2.287 (−25.33)***	−2.272 (−25.12)***	−2.292 (−25.16)***
SGR (매출액증가율)	0.145 (6.05)***	0.204 (9.47)***	0.203 (9.41)***	0.201 (9.30)***
LKR (노동−자본비율, 인건비/자산비율)	0.004 (0.82)	−0.005 (−1.87)*	−0.005 (−1.82)*	−0.002 (−0.68)
D1 (대기업,중소기업)			0.013 (2.07)**	0.016 (2.39)**
D2(I2) (전기가스증기업)				−0.044 (−1.47)
D2(I3) (건설업)				−0.136 (−0.91)
D2(I4) (도소매업)				−0.028 (−2.26)**
D2(I5) (운수업)				−0.002 (−0.10)
D2(I6) (통신업)				−0.022 (−0.50)
D2(I7) (부동산,사업서비스업)				−0.063 (−4.39)***
D2(I8) (오락문화산업)				−0.0455 (−0.65)
D2(I 10) (기타산업)				−0.010 (−0.42)

주: 1. reg1의 ( ) 안은 t-value값, reg2, 3, 4의 ( ) 안은 Z값
2.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

먼저,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이자율은 모두 경상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기대대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개선은 경상이익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의 인하도 경상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경상이익률 증가에 주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하며,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가량 증가하고, 부채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경상이익률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 증가율의 상승과 노동-자본비율의 증가도 일반적 예측과 동일하게 경상이익률에 각각 정(+)의 효과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자본 비율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재무구조 조정에 비해 인력구조조정은 경상이익률의 개선에 대한 기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가량 증가하고, 부채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경상이익률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경상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경상이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비해 더 뚜렷한 이익의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산업구분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더미변수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서,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소매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상이익률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업 수익률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소득변이 함수 접근법

외환위기 이후 기업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한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계속 흑자 폭이 확대되는 반면, 적자기업들의 손실은 계속 지속되거나 적자 폭 자체가 커지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제 개별기업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본절의 목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절에서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기업소득 변이(transition)함수에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업 수익률 구조의 고착화 또는 양극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상장기업으로 국한한다.

먼저 기업 경상이익의 변이 분석을 경상이익률의 순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 방법의 요체는 개별 기업의 경상이익률 순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t년도에 일정한 경상이익률 순위를 갖는 기업의 차기년도(t+1년도) 경상이익률 순위의 분포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은 이러한 순위 변이의 확률분포가 외환위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조건부 분포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과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ariance)으로 나누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45도 기울기보다 약간 완만한 형태를 보인다.

어 관찰한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경상이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인접한 두 해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성한다. 동일한 방법을 외환위기 이후(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상이익률 자료에 적용하여 순위의 변이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는다. 비모수적 추정방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하여, t년도 경상이익률 순위가 주어졌을 때, 차기연도 경상이익률의 순위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 및 분산(외환위기 전과 후 비교)

〈조건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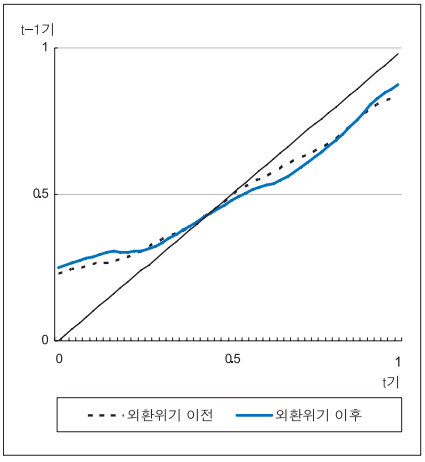

〈조건부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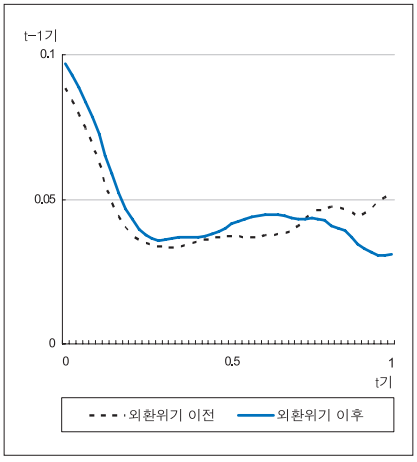

[그림 7]에 나타난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조건부 평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45도 기울기보다 약간 완만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금년도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업은 다음 해에 다소 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금년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은 차기연도에 성과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5도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순위가 어느 정도는 다음 기(期)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의 형태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이익률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순위변이 확률분포의 조건부 분산을 보면, 외화위기 이후에 현재 우량한 기업의 다음 기의 성과(평균적으로 여전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환위기 전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량기업의 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은 외환위기 이후에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건부 분산의 전반적인 형태는 하위기업의 다음 기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음을 의미한다.

우량기업의 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은 외환위기 이후에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건부 분산의 전반적인 형태는 하위기업의 다음 기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업 경상이익의 변이 분석을 개별 기업의 경상이익률 순위가 아닌 경상이익률의 수준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경상이익률의 변이의 조건부 확률분포가 외환위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전 5개년과 위기 이후 5개년의 경상이익률 수준 변이의 기초 자료를 생성한 후,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t년도 경상이익률이 주어졌을 때 차기연도의 경상이익률 수준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을 구한다.

[그림 8] 경상이익률의 조건부 평균 및 분산(외환위기 전과 후 비교)

〈조건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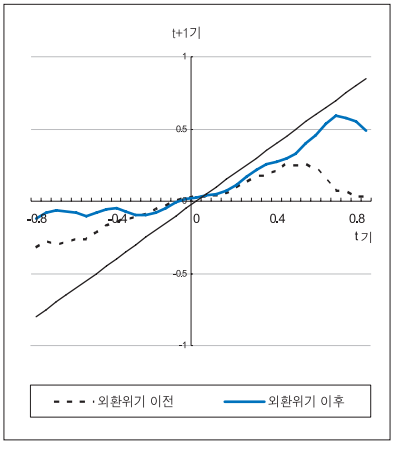

〈조건부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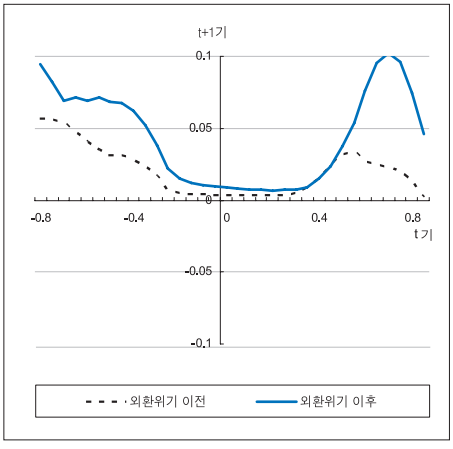

기업 경상이익률 수준의 변이 과정에 대한 추정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기 경상이익률 자체에 대한 조건부 평균의 모습 역시 45도선 이하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기업의 경상이익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경상이익률 순위 변이 함수의 경

외환위기 이후에는,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우와 달리, 경상이익률 수준의 변이 양상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높은 경상이익률 수준을 보이는 기업의 경우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이 45도선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커서 이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다음 기에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이익 반전의 가능성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반전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이익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낮은 경상이익률의 기업의 경우에도 미래 경상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이익 증가가 전체 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경상이익률 변이 분포함수의 조건부 분산의 형태는 양 극단에 위치한 기업의 차기연도 경상이익에 대한 기대치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상이익률 수준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법인 수의 증가와 100대 기업 실적의 영향

기업단위 분석만으로 전체 법인세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법인 수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법인등록 기업의 수는 2000년 이후 4개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에, 기업단위 분석 이외에 전체 법인 수의 증가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몇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환위기인 1998년 이전에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64%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본절에서는 납부세액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들을 분류한 뒤,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1. 법인 수의 증가

법인당 납부세액은 비교적 일정한 가운데 법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1997년에 9만 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인 수는 2005년에는 22만 3천개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표 3〉을 보면, 흑자법인 수의 증가율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6%, 6.17%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매년 1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4.52%와 6.27%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납부세액의 증가율은 큰 편차를 보여주지만 평균적으로 5.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법인의 수가 11.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인당 납부세액은 비교적 일정한 가운데 법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표 3〉 법인 수와 법인세수의 증가

(단위: 개, 백만원, %)

	법인 수	증가율	징수액	증가율	1개 법인당 납부액	증가율
1997	94,392		9,424,669		100	
1998	96,842	2.60	10,775,797	14.34	111	11.44
1999	102,813	6.17	9,365,392	−13.09	91	−18.14
2000	133,072	29.43	17,878,435	90.90	134	47.49
2001	154,745	16.29	16,975,149	−5.05	110	−18.35
2002	177,383	14.63	19,243,149	13.36	108	−1.11
2003	201,075	13.36	25,632,684	33.20	127	17.51
2004	210,160	4.52	24,678,343	−3.72	117	−7.89
2005	223,331	6.27	29,805,400	20.78	133	13.65
평균	154,868	11.66	18,197,669	18.84	115	5.58

주: 법인 수는 흑자법인 수임.

법인 수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모델 1에서는 로그를 취한 영업잉여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모델 2에서는 로그를 취한 영업잉여뿐 아니라 법인 수까지도 설명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모델 1과 모델 2의 비교를 통해 법인 수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 수가 10% 증가하면 GDP 대비 법인세수는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1 : $Y_t = \alpha + \beta_1 X_{1.t} + e_t$
모델 2 : $Y_t = \alpha + \beta_1 X_{1.t} + \beta_2 X_{2.t} + e_t$

Y : GDP 대비 신고세액(1975~2004년)
X_1 : ln(영업잉여)
X_2 : ln(법인수)

아래의 〈표 4〉에 요약되어 있는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 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모델 1의 경우 R-square값이 0.134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설명변수로 법인 수를 추가한 모델 2의 경우 R-square 값이 크게 개선된 0.859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 수가 법인세수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인 GDP 대비 신고세액의 실제 값과 모델 1, 2의 추정을 통해 추정된 Fitted Value를 비교한 [그림 9]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모델 2의 Fitted Value는 실제 값과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는 반면 모델 1의 Fitted Value는 실제 값과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모델 2의 추정 결과, 설명변수인 법인 수의 계수 값은 0.0061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인 수가 10% 증가하면 GDP 대비 법인세수는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6].

〈표 4〉 법인 수와 법인세수에 대한 추정결과

	모델 1(법인 수 제외)	모델 2(법인 수 포함)
α	0.0410*** (3.67)	−0.0327*** (−4.22)
β_1	0.0102** (2.07)	0.0078*** (3.82)
β_2		0.0061*** (11.79)
R-square	0.134	0.859

주: ( ) 안은 t-value, *, **, ***는 각각 90%, 95%, 99%의 유의수준을 의미

6) 법인 수에 대하여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제 법인 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 수를 30만개로 가정한다. 따라서 법인 수 10%의 증가는 3만개의 법인이 증가할 경우이며, 이때 GDP 대비 법인세수는 0.58%포인트 증가한다.

[그림 9] GDP 대비 신고세액의 실제값과 Fitted Value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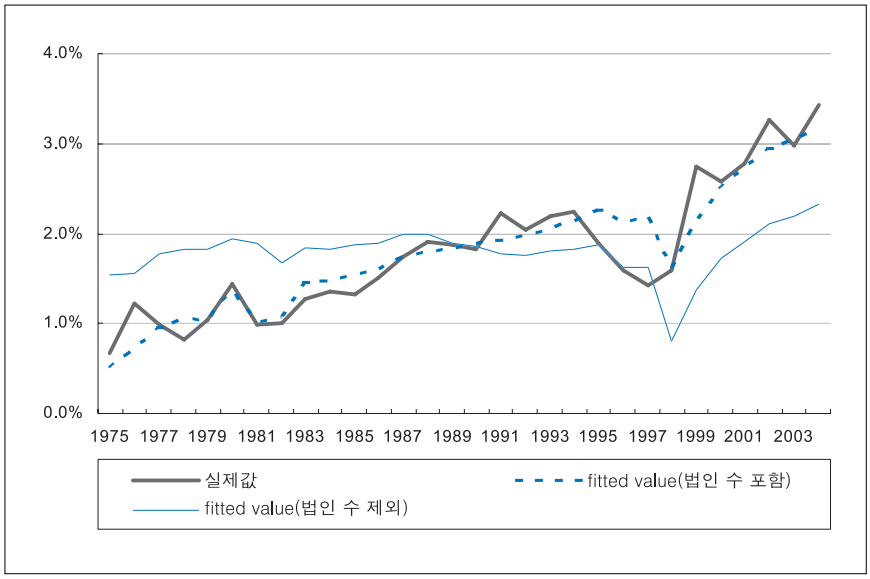

5대 기업의 비중이 1997년 15%에서 2002년 23%로 1.5배 증가했으며, 100대 기업의 비중은 1997년 33%에서 2002년 64%로 1.9배 증가하였다.

2.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향

2005년을 기준으로 약 33만개의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적자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법인세수는 몇몇 대규모 기업에 의존한다. [표 5]에서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을 제외하면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5대 기업의 비중이 1997년 15%에서 2002년 23%로 1.5배 증가했으며, 100대 기업의 비중은 1997년 33%에서 2002년 64%로 1.9배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전체 법인세수가 8조 4천억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은 8조 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위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이들이 법인세수에 차지하는 비중 및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5〉 납부세액 100위 기업의 평균유효세율

(단위: 억원, %)

	평균유효세율 (세액/과표)	과세표준	증가율	총부담 세액	증가율	전체세수 (전체법인)	증가율	비중
1997	25.10	122,079		30,640		94,247		32.51
1998	24.81	144,944	18.73	35,966	17.38	107,758	14.34	33.38
1999	24.06	302,628	108.79	72,825	102.48	93,654	−13.09	77.76
2000	24.49	324,609	7.26	79,512	9.18	178,784	90.90	44.47
2001	24.97	357,717	10.20	89,332	12.35	169,751	−5.05	52.63
2002	23.09	529,686	48.07	122,316	36.92	192,431	13.36	63.56
평균	24.42	296,944	38.61	71,765	35.66	139,438	20.09	50.72

1997년부터 2002년 동안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유효세율[7]은 약 24.42%로 계산되었으며,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각 연도의 평균유효세율은 1997년 25.1% 수준에서 1998년 24.81%, 1999년 24.06%로 소폭 하락한 뒤, 2000년과 2001년에는 24.29%와 24.97%로 약간 상승하였다. 2002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관측기간 중 가장 낮은 23.0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인세 명목세율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8%(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 2001년부터는 27%(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가 적용되었다. 아래의 [그림 11]에서는 종축에 과세표준을, 횡축에 평균유효세율을 사용하여 기업규모가 평균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과세표준과 평균유효세율의 관계가 거의 수평적 관계로 나타나서, 기업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은 누진적이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그림 11] 과세표준 대비 평균유효세율 및 납부세액 비교(2002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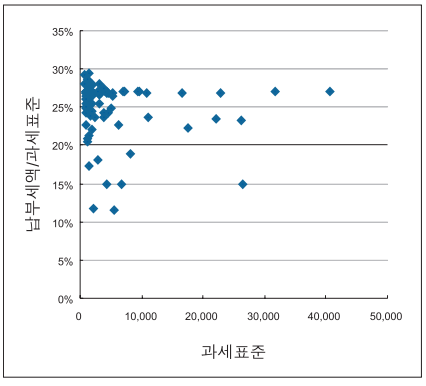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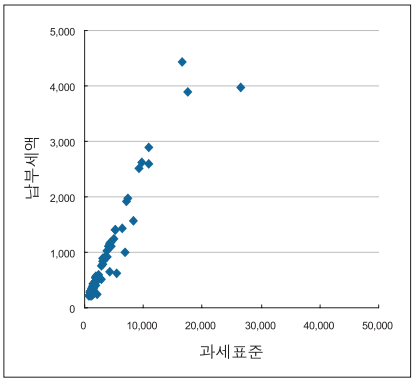

7) 여기서의 평균유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의미한다.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 차지하는 비중 및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 수익률의 증가는 상위 100대 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수가 편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확인되었다. 이는 상위 기업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상위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득 규모도 커지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진 것은 기업 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한 기업소득과 법인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법인 수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의 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법인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단순히 기업의 세부담(평균유효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률 개선이나 전체 법인 수의 증가 또는 규모에 따른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와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조정 성과로서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영업외손익이 크게 개선되어, 기업의 경상이익과 법인세수가 함께 증가하였다. 이외에 외환위기 직후 신설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전체 법인 수의 변화도 법인세수의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 대규모 기업과 다수의 소규모 기업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대규모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거대 우량기업의 고수익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전체 법인세수 신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의 심화를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 자료에서 기업의 수익률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외환위기 이후 수익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법인세수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재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외손익률 개선 효과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기업소득 증가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개선 여지는 많지 않다. 따라서 2000년대 초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한 기업소득과 법인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법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기업회계의 투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 높다.

인 수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의 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제상에서 유리한 혜택을 누림에 따라 법인기업의 신설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법인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동업기업(Partnership)과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2009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는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8]. 소수 우량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의 경향과 기업의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소득의 격차가 심화되어 규모의 양극화는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우량기업의 양호한 수익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법인세수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미래 법인세수의 증가 추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기업회계의 투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 높다. 따라서 최근 기업회계 감독과 관련한 주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규정 강화가 기업의 신고소득 증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요구된다. KiPf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호.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5.

민희철, 「법인-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효과분석」, 『재정포럼』, 제120호, 한국조세연구원, 2006. 6.

박기백 · 김진, 『법인세 부담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한국신용평가, Kis-Value, 2007.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05.

8)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시행시 법인세수는 감소할지라도 개인소득세수는 증가할 것이므로 전체 세수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Devereux, Michael P. and Rachel Griffith and A. Klemm, "Why Has UK Corporation Tax Raised So Much Revenu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04.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wson@kipf.re.kr)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Ⅰ. 서 론

경제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회는 다변화되어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민간부문으로부터 비영리단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부자 및 기부수혜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과거의 자선적 기부활동에서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추세이다.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기업 사회공헌 현황과 최근의 실태 및 관련 제도의 소개 ·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사회공헌 개념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확히 말해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CSR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선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CSR의 한 부분에 속한다. 여기서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의무이행이 강조되는 사회적 책임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법적 · 사회적 제제 및 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자선적 책임은 사회적 공익활동이 강조되는 사회공헌으로 자율성이 보다 강조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화 및 표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CSR을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Ⅲ. CSR: 국내외 동향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화 및 표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CSR을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윤리경영, 노동, 환경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민단체, 국제기구, 정부의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 해외동향

2000년 7월 발족된 UN Global Compact는 4개 영역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의 핵심가치를 지지하고 채택하여 규범화하고자 설립되었다. 세계적으로 2,729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현재 12개 업체가 (Eco-Frontier, 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가입되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1]는 각국의 상이한 CSR 표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CSR 기준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중이다. 2004년 6월 SR표준가이드라인(ISO 26000)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8년 10월 표준규격 발간을 목적으로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

OECD는 1977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제정 이후 4차례 개정을 거쳐 노동관계, 환경, 뇌

1)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26년 I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izing Associations)를 설립해 기계공학 분야에서부터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주로 각국의 공업규격을 조정 · 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유도하며, 과학적 · 지적 · 경제적 활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함. ISO가 다루는 분야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담당 분야인 전기와 전자 공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IEC,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등 기타 전세계 500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1987년 최초로 ISO 9000시리즈를 제정하는 등 설립 이래 2000년 현재 1만 2000건 이상의 광범위한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 공표하고 있음.

과거 우리나라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히 자선적 ·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 등 분배 중심적 패러다임에 치중되어 있던 반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방지, 소비자이익 등에 대한 기업행동준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선활동(Phiantrophy)은 기업의 사회공헌 영역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부유한 사업가들의 재단 설립을 통한 자선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2. 국내동향

2000년대 이후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히 자선적 ·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 등 분배 중심적 패러다임에 치중되어 있던 반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2]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익연계마케팅 또는 대의마케팅(Cause related marketing) 활동을 강화하면서 사회공헌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형태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변화되고 있다.

Ⅳ. 사회적 기업

본절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소개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OECD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반활동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사회적 기업은 주로 사회적 목표의 비즈니스이다. 그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익 최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표를 위해 비즈니스 또는 공동체에서 재투자한다."라고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란, 기업의 윤리적 가치관과 기업경영전략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주요한 투자행위 중 하나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이름.

사회적 기업은 효율적인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 탄생되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산업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출현되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통합, 일을 통한 복지(Making work pay)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노동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2007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규모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개사의 평균 사회공헌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Ⅴ. 사회공헌 현황

1.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규모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개사의 평균 사회공헌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은 기업의 세후이익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을 일정 수준(세후이익 대비 2.2%)으로 유지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장기적 ·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기부금과 직접프로그램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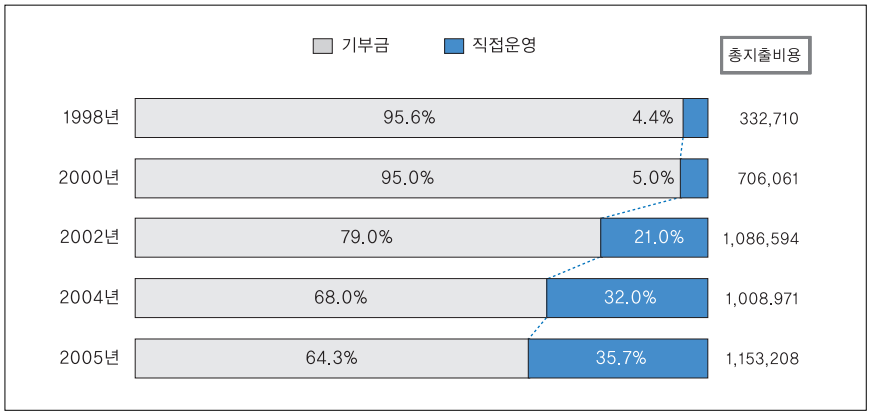

자료 : 전경련, 『기업 ·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5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전달보다 직접적으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 구성에서 직접운영프로그램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이후 기업의 직접운영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5년 기준 지출구성 중 기부금 비중은 64.3%, 직접운영프로그램은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전달보다 직접적으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직접운영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의 다른 경영활동인 마케팅 및 홍보와 연계해서 기업의 독점적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기부금 현황

가. 미국

지난 40년 동안 기업기부금의 평균 증가율은 2.7%, 1996년 이래로 평균 증가율은 3.2%로 최근에 와서는 기업이 기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기부금은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Fortune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기부 형태가 다소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업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 기부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부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분야에 대한 기부비율이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부 비중도 2004년 6.3.%에서 2006년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일본

2004년 이후 일본기업의 총 기부금 규모(경단련 설문응답기업대상)은 1,032억엔으로 200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2004년도 평균 기부금액은 2억 4천만엔으로 2003년도에 비해 5.7% 증가하였다.

일본기업의 총 기부액 중 현금 이외의 기부금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한국

2004년 기준 KOSPI 200 기업들의 기부금 수준은 매출 대비 0.22%, 세전이익 대비 1.83%로 미국 및 일본의 상위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2003~2005년 동안 1.8조원, 2.1조원,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경련에서 발간하는 2005년판 『사회공헌활동백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기부금액은 36억 1,500만원으로 2002년(42억 5천만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는 2005년 기준 교육 · 학교 및 학술연구분야가 평균 12억 1,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평균 10억 500만원으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한 · 미 · 일 기부금 비교

국내기업의 경영규모 대비 자선활동 수준은 양적으로 이미 선진국을 추월한 단계이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기준 KOSPI 200 기업들의 기부금 수준은 매출 대비 0.22%, 세전이익 대비 1.83%로 미국 및 일본의 상위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표 1〉 한 · 미 · 일 기부금 비교 (2004년)

(단위: %)

	1개사 평균	매출 대비	세전 이익 대비
한국	58.3억원	0.22	1.83
미국	0.2억달러(191억원)	0.17	1.68
일본	5.1억엔(42.8억원)	0.08	1.39

주: 한국: KOSPI 200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80개 업체,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기준
미국: S&P 500 기업 중 설문 응답 190개 업체, 현금 기부금 기준
일본: 경단련 회원 기업 중 1% 클럽 회원 147개 업체, 응답 기부금 기준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선진화를 위한 5대 실천과제』, 2007

기부금 관련 세제는 개인별 손금한도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Ⅵ. 기부금제도

본절에서는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지원제도 중 세제지원의 내용과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에 대하여 소개한다.

1. 기부금 관련 세제

〈표 2〉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 요약

개인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법인기부자
법정기부금 (100%)	– 국가 · 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 산학협력단 · 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 · 장학금('09년 일몰)	법정기부금 (75%) ('09 이후 50%)
	– 사립학교병원 · 국립대병원 · 서울대병원 · 대한적십자병원 ·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09년 일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09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개인만 적용)	해당없음
특례기부금 (50%~30%)	〈개인 · 법인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09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개인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10%)	〈지정기부금단체〉 – 학술 · 장학 · 기술진흥 · 문화예술 · 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단체 *지정현황 : 1,137개('07말 현재) –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지정현황 : 79개 지정('07말 현재)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 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해당없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기부금 관련 세제는 개인별 손금한도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기부금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은 법인(법법 24②)에 의하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5%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2005년까지는 100%, 2006~2008년 기간은 75%, 2009년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되고 있다. 2005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법정기부금에 대해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으나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손금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특례기부금(조특법 73①)은 법정기부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기부금으로 독립기념관, 사내복지기금, 국립암센터 등이 해당된다.

지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 15%(2010년에는 20%), 법인의 경우 소득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기부금으로 문화예술, 학술, 종교 등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비영리분야의 단체들에 기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2006년 3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법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종래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2.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부는 2006년 3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법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종래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변경된 이 법률에 의하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 ·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 ·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현실화하였다.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은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고, 프랑스는 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 세제 관련 국제비교

조세혜택이 인정되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범위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개별적인 요구조건이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동물보호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은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고, 프랑스는 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조세혜택의 범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동소이하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보통 소득의 5~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하고 한국의 경우도 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Ⅶ. 주요국의 사회공헌 관련 제도

본절에서는 조성된 기부금의 효율적 사용과 기업 사회공헌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1. 미국: CCF(Compassion Capital Fund)

미국의 CCF(Compassion Capital Fund)는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Intermediary organization(매개체의 NGO)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CCF(Compassion Capital Fund)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부시대통령의 Faith based Community initiatives (지역사회 중심의 자선단체)의 핵심요소이다. 이에 CCF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선단체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증진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CF는 "intermediary organizations (매개체의 NGO)" 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intermediary organizations"은 기술적 자문 (Technical Assistance)과 보조금(Sub-Awards)을 소규모의 자선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 연방기금은 OMB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OMB는 기금 관련 연방정부기구와 수혜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기금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법과 규정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감독한다.

[그림 2] CCF(Compassion Capital Fund)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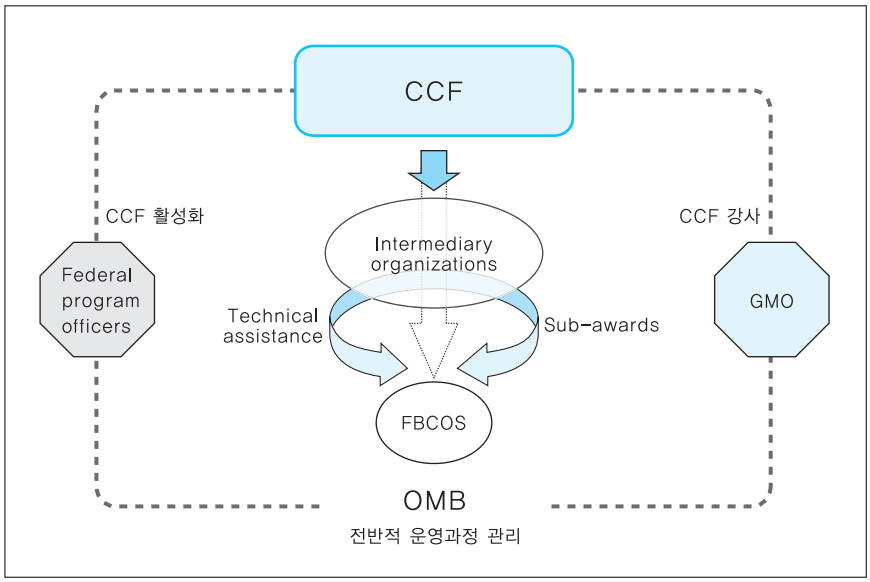

주: 약어 설명
FBCOs: 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s
GMO: Grant Management Officers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영국의 조달 관련 규정은 EU 조약과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공공조달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2. 영국: Procurement Action Plan (조달사업계획)

영국의 조달 관련 규정은 EU 조약과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공공조달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환경, 윤리, 노동 관련 기준을 제시하여 정부조달품 사업체를 검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CSR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조달 담당 직원들은 조달품 관련 사회 관련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무역협회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각 조달품 계약의 주요 요소인 최소한의 필요기준인 Core requirement를 선정하게 된다. Core requirement는 지역사회, 노동, 장애, 성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요소들로 선정할 수 있다. 일례로 Schools procurement programme (학교조달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를 공급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면서 공급대상자를 공공영역을 후원한 사업자에게만 접근권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매 3년마다 행정부가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각 부처는 공공영역에서 지속가능 개발과 CSR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 1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공익활동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은행은 공익활동보고서(Public Accountability Statement)를 매년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일반인에 공시해야 한다(은행법 459.3). 주요 공시항목은 자국기업에 대한 여신 실적, 지역사회개발, 중소기업 여신, Micro-credit 지원, 기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Ⅸ. 문제점 및 정책시사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부적 저해요인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부족(19.7%),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의 부재(34.6%), 외부적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 부족(23.1%)과 사회적 인정 부족(22.1%)이 꼽혔다.

또한 기업기부 애로요인을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23.8%), 예산 등 내부자원 부족(22.8%), 비영리단체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22.2%)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에서 소개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공헌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와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사회공헌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DB화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가장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공헌 관련 DB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등 사회공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처 간의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업사회공헌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각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후관리가 취약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비영리단체의 기능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비영리단체의 세무신고서를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상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KiPf

<참고문헌>

노동부,『사회적 기업제도에 대한 이해』, 2007

대한상공회의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선진화를 위한 5대 실천과제』, 2007

전국경제인연합회,『기업 ·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5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OECD 대표부,『OECD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시사점』, 2006

CA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haritable giving Number* 2006

CECP, *Giving in numbers* 2005, 2006, 2007

Giving institute, *Giving in* USA 2007

Government of Canad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 Implementation Guide for Canadian Business*, 2006

HM Treasury, *Transforming government procurement*, 2007

http://www.omb.gov

http://www.philanthropyuk.org

http://www.unglobalcompact.org/

현안분석 3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1)]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npark@kipf.re.kr)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성 인지 예산이 주목받고 있다.

Ⅰ. 서 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 Gender-Sensitive Budget)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 인지 예산은 1984년 호주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인지 예산에 관한 행동강령이 채택된 후 확산되고 있다. 이들 성 인지 예산에 관한 움직임은 시민사회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유엔여성기금(UNIFEM)과 국제개발연구센터(IRDC)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성 인지 예산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중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여성운동단체(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예산운동의 일환으로 성 인지 예산 개념이 공론화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2006년 성 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 인지 예산제도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6년 9월 8일에 국가재정법이 통과되어 동년 10월 4일에 공포되었는데, 이 법에는 성 인지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 인지 예·결산 보고서 제출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성 인지에 관한 예·결산 보고서 제출까지 시한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제도의 운영방안 도출이 당면과제이다.

1) 본 원고는 저자와 원종학(한국조세연구원)박사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 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의 단위과제로 수행한 「성 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개발」중 성과관리체계 부분을 재구성하고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국가재정법에 의할 경우 성 인지 예산제도는 명시적으로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사업뿐 아니라 일반예산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전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제도의 실행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행정비용 내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이 정한 성 인지 예산의 범위는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사업뿐 아니라 정부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예산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 연구에 의하면 성 인지 예산의 범위는 크게 1)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그리고 3) 위의 두 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이 정한 성 인지 예산의 범위는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사업뿐 아니라 정부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예산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의 문제인식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양성평등을 명시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뿐 아니라,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일반예산의 운용 방식도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일반예산도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포함된 성 인지 예산의 범위는, 성 인지 예산 운동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예산의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다.

앞서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제도의 운영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과연 일반예산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분석방법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며,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행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과관리의 관점에서도 일반예산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과 중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와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정책예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일반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별개의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기존의 일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는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목표를 가진 경우는 성과관리 대상으로 파악되지만, 일반예산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체계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별도로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향

성 인지 예산의 초점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양성평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뿐 아니라, 일반예산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성 인지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본 연구는 성 인지 예산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수립에 초점을 두고,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Ⅱ장에서는 성 인지예산의 목적과 범위를 소개한다. 제 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논한다. 제 Ⅳ장에서는 성 인지 예산을 양성평등예산과 일반예산으로 구분하여 각 예산을 성과관리하는 방안을 논한다.

Ⅱ. 성 인지 예산의 목적과 범위

1. 성 인지 예산의 목적

기획예산처는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양성평등정책예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성별영향평가사업예산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2006년 9월에 통과된 국가재정법에는 성 인지 예 ·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런 변화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성과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변화의 대상은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산(여성지원예산 및 여성가족부 예산)만이 아니라 정책 대상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일반예산도 포함된다.

성 인지 예산의 초점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양성평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뿐 아니라, 일반예산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인지 예산은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평등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 인지 예산 관리의 필요성으로 자주 제시되는 예는 공공화장실의 경우다. 공공화장실의 경우 남녀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한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양성 간 형평성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남녀의 수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적으로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양성평등을 해치는 결

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공화장실의 예는, 성 인지 예산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성 인지 예산이 일괄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제도임을 시사하고 있다. 성 인지 예산에는 적어도 두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여성과 남성의 수요가 다를 수 있는 예산사업의 영역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실제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추정하여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부처와 예산당국이 일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의 일부로 수행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상의 예산 과정의 일부로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한 접근방법이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성 인지 예산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2. 성 인지 예산의 범위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성 인지 예산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 사용되는 성 인지적 분석을 위한 예산의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2].

① 남성 혹은 여성만을 위한 성 특정적(gender-specific)지출 : 여성 혹은 남성만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출로 여성에 대한 폭력, 유방암 혹은 전립선암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특정 성에 대해 할당되는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고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 예를 들어, 공공부문(특히 여성공무원)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나 모성보호와 같이 성 형평성(gender equity)을 확보하기 위해 쓰이는 지출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남녀고용의 평등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대표적인 예산지출이다.

③ 일반 주류정책의 예산: 위의 두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로서 일반예산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범주 안에 ①, ②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김경희, 2006). 또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앞의 두 범주의 정책은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온 여성정

2) 『양성평등정책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16, p. 25.

일반적인 일반예산 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이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개선, 그리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양성평등정책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범주의 사업을 굳이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성 인지 예산을 논할 때의 핵심은 세 번째 범주인 일반예산사업이다. 성 인지 예산 운동의 핵심은 기존의 여성 대상 사업뿐 아니라 중립적으로 보이는 일반예산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예시인 공공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설치에 드는 비용도 남성과 여성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지출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일반예산에는 이러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별로 분석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예산 지출이 적지 않게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성격의 일반예산을 유형화하여 일반적인 분석의 틀이나 기법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아직까지 개별 사례 중심의 문제 제기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일반예산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당국에서 운영하는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는 사업의 목적이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성과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예산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체계는 없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별도의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왔다. 여성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정책예산과 현재 일반사업 중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 규정된다.

양성평등정책의 경우는 성 인지 예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를 포함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는 일반예산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우리나라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성 인지 예산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정책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일반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은 앞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정책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일반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 인지 예산 자체의 성과관리를 위해 개발된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분야의 예산에 대응하여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들이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목적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가. 양성평등정책

1)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현황

양성평등정책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한 정책으로서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분야별 여성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정책에 남녀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의 여성정책 추진 능력과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기획 · 조정 · 종합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평가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정책과제와 115개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되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3].

2) 양성평등정책 성과관리의 문제점

2006년에 국회 예결위 내에 여 · 야 의원이 참여하는 성 인지 예산 · 결산 편성을 위한 TF팀 구성이 되었다. 이후 성 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첫 단계로서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2007년도 예산안이 성별 영향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향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행되고 성과가 관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첫 걸음으로, 양성평등정책 대상 사업은 예산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양성평등 정책 자체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명시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나, 그동안 수립되어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점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양성평등정책이 어떻게 파악되어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5년도 시행실적 및 2006년도 시행계획을 참조하라.

만약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양성평등 관련 예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2005년도 여성정책 시행실적을 살펴보면, 이행 실적 논의는 주어진 계획의 이행 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순한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과 불용액, 재원 등의 간략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어 성과관리의 핵심적 정보인 환류정보가 미흡하다. 이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엄밀한 평가방식이 개발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4].

둘째, 기존 재정성과관리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재정성과관리의 축을 이루고 있는 재정자율사업평가제도의 평가와 양성평등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2005~2007년 각 부처의 재정사업자율평가와 2005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한 여성정책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 평가를 받은 예산사업 중 여성정책에 포함된 사업이 아주 소수임을 알 수 있다[5]. 이는 양성평등정책이 정책 중심의 분류로서 예산사업과의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관리되는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소수이므로,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양성평등 관련 예산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양성평등 관련 예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단위의 문제 때문에 양성평등정책 예산사업이 기존의 평가제도에서 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성별영향평가

1) 성별영향평가 현황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오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 · 평가 등)에 기반하여,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평가의 대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에 제한은 없다. 다만 우선 적용 대상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된다[6].

4) 실제 사례 분석은 박노욱 · 원종학 (2007) 참고
5) 실제 사례 분석은 박노욱 · 원종학 (2007) 참고
6)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2007년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여성가족부, p. 13.

▷ 우선 적용 대상 정책
: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예산 규모가 크며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정책, 수혜 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이미 양성평등한 정책 효과를 위해 계획 ·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오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별영향평가는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우선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평가지침 통보 후, 기관별로 평가계획서를 작성 ·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기관별 평가계획서를 종합하고, 기관들은 정책단계별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지표별 점검 포인트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에 추진실적을 보고한다. 또한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기관 등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한다.

〈표 Ⅲ-1〉 성별영향평가 과정

연도별 평가 지침 통보	• 여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광역)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 자문
기관별 평가계획서 작성 ·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여성가족부 –기관은 여성가족부의 자문 등 지원 활용 –여성가족부는 계획서를 종합
기관별 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과제별 평가지표 보완 –성별통계, 국내외 문헌연구, 여성가족부 자문, 학계 및 NGO 등의 전문가 의견 등 정량적 · 정성적 자료 활용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평가추진 관리 ※ 중간결과보고서는 6월말까지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보고 • 여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 기관 등에 인센티브 제공

위의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책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점검 포인트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단계별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대해 살펴보면, 평가지표는 정책입안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공통사항으로 성별 통계의 생산 · 활용을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정책 입안 및 결정 단계에서는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정책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을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정책 서비스 전달방식의 양성평등성, 정책 홍보 방식의 양성평등성을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평가결과 정책 개선방안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성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표 Ⅲ-2〉와 같이 변화되어 왔다.

〈표 Ⅲ-2〉 2005~2007년 성별영향평가지표 비교

구분	05년 평가지표(주요항목)	06년 평가지표(주요항목)	07년 평가지표(주요항목)
공통사항		①성별분리통계 생산 · 활용	①성별통계 생산 · 활용
정책입안 및 결정	①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관련성 파악 ②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③정책입안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②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③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②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③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참여 ④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정책집행	⑤성 인지적 예산 편성 ⑥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⑤정책서비스 전달 체계 및 전달방법의 양성평등성 ⑥정책홍보 방식의 양성평등성	⑤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⑥정책 홍보 방식의 양성평등성
정책평가	⑦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⑧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⑨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⑦정책수혜(예산 배분 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 ⑧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⑦정책수혜(예산 배분 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 ⑧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⑨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첫째, 성별영향평가가 필요성에 맞게 우선 선정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과제선정상의 적합성이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신이 양성평등정책이 아니라, 일반예산사업이나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적절하게 과제가 선정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지표와 점검 포인트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성별영향평가지표는 정책의 성별 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질적 지표 중심으로 하고, 모든 정책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통합적이고 정형적인 평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 지표별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만약 지표가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량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지표의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한다.

아동 · 노인 · 보육 등의 가족정책은 과거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여겨졌으나, 현재 이들 정책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책수혜 대상을 남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내용이 가족과 관련된 가족정책 범주로 설정되었다.

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평가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의 적절성

우선 2005년~2006년에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에 선정된 평가과제들은 크게 공공부문의 적극적 조치에 집중된 여성정책, 아동 · 노인 · 보육 등의 가족정책, 여성정책이 아닌 일반정책으로 구분된다.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의할 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로서, 전체 85개 과제의 20%인 17개 과제이다[7].

아동 · 노인 · 보육 등의 가족정책은 과거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여겨졌으나, 현재 이들 정책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책수혜 대상을 남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내용이 가족과 관련된 가족정책 범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과제들은 전체 85개 과제 중의 7% 정도인 6개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이 일반정책으로 대략 평가사업의 73% 정도를 차지한다. 이 범주에서는 200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성별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성별영향평가의 초점을 맞추지 못했거나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전체의 21% 정도인 18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성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부적절한 일반정책을 제외하면, 전체 과제 중 44개 과제(52%)는 성별영향을 파악하기 적합한 과제들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선정 과제 중 절반 정도만 평가 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시행된 200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범주에 따른 분류[8] 를 중심으로 보면,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총 187개 기관 314개 과제가 있었으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38개 기관 60개 과제(심층 6개, 자체 54개)가 평가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중

7) 「200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평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06. 03, p. 14.
8) 「2006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07. 03, p. 20.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의 선정이 줄어들었으며 일반정책이 늘어났다.

심으로 살펴보면 총 136개 과제가 평가되었다. 이 중 여성대상정책은 5개로 3.7%에 해당한다. 가족정책은 11개 과제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정책은 120개 과제로 88.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종합결과서를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의 선정이 줄어들었으며 (20%→3.7%) 일반정책이 늘어났다. 일반정책의 경우 2005년에 52% 정도만이 성별영향평가에 적합한 과제로 판정되었으나, 2006년의 경우 68.4% 정도로 상승하였다.

〈표 Ⅲ-3〉 범주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의 추이(2005~2006)

(단위: 개, %)

정책범주	2005		2006	
	과제 수	비 중	과제 수	비 중
여성정책	17	20	5	3.7
가족정책	6	7	11	8.1
일반정책	62	73	120	88.2
(일반정책 중 성별영향파악 적합한 과제)	(44)	(52)	(93)	(68.4)
합계	85	100	136	100

(2)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의 적절성

성별영향평가의 점검포인트를 중심으로, 2006년 성별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자. 다만 2006년 전체 사례 중(314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는 여성정책과 넓은 의미로 여성정책으로 볼 수 있는 가족정책은 제외하고, 성별영향평가가 타당한 일반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자[9]. 자세한 항목별 점검은 박노욱 · 원종학(2007)을 참고하고, 본고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답변 사례를 예시적으로 소개한다.

상기 평가항목에 대한 답변은 [그림 Ⅲ-1] 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한 평가에 기초한 기술보다는 추측이나, 정책목표를 그대로 적시한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군 의료정책 서비스 정책의 경우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는지, 성 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기여하는지,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성별영향평가 개념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노력을 하게 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9)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은 박노욱 · 원종학(2007)을 참고

각각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한 정책영향의 양성평등 성과 관련하여 정책목표를 유사하게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는 2003년 즉,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미 추진된 바가 있다.

[그림 Ⅲ-1] 국방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정책영향 평가

국방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군 의료정책 서비스 정책 : 실무자들이 성별영향평가 개념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노력을 하게 되었음	취업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알선과 직업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에 기여	자활 근로사업 : 자활근로사업은 자립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여성 수급자 등의 참여를 통해 자활, 자립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3)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예산 정보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관들이 제시한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54개 중에서 25개 과제(48.1%)만이 예산규모를 제시하였다. 과거 2004년, 2005년에 수행된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되었듯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는 비예산사업인 경우도 있으나, 부처의 입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예산 편성에의 환류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는 정도가 미흡하다는 것도 예산 정보 미제시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 재정 성과관리제도 내에서의 성 인지 예산 성과관리 현황

가. 재정성과관리 개요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는 2003년 즉,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미 추진된 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틀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략목표-성과목표-단위사업의 체계를 바탕으로 소수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또는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의 특징은 일선 부처에 사전적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사업운영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내외부의 문제 지적이 있는 소수의 선택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내외부의 지적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의 특징은 일선 부처에 사전적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사업운영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 성과관리제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Ⅲ-2]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Ⅲ-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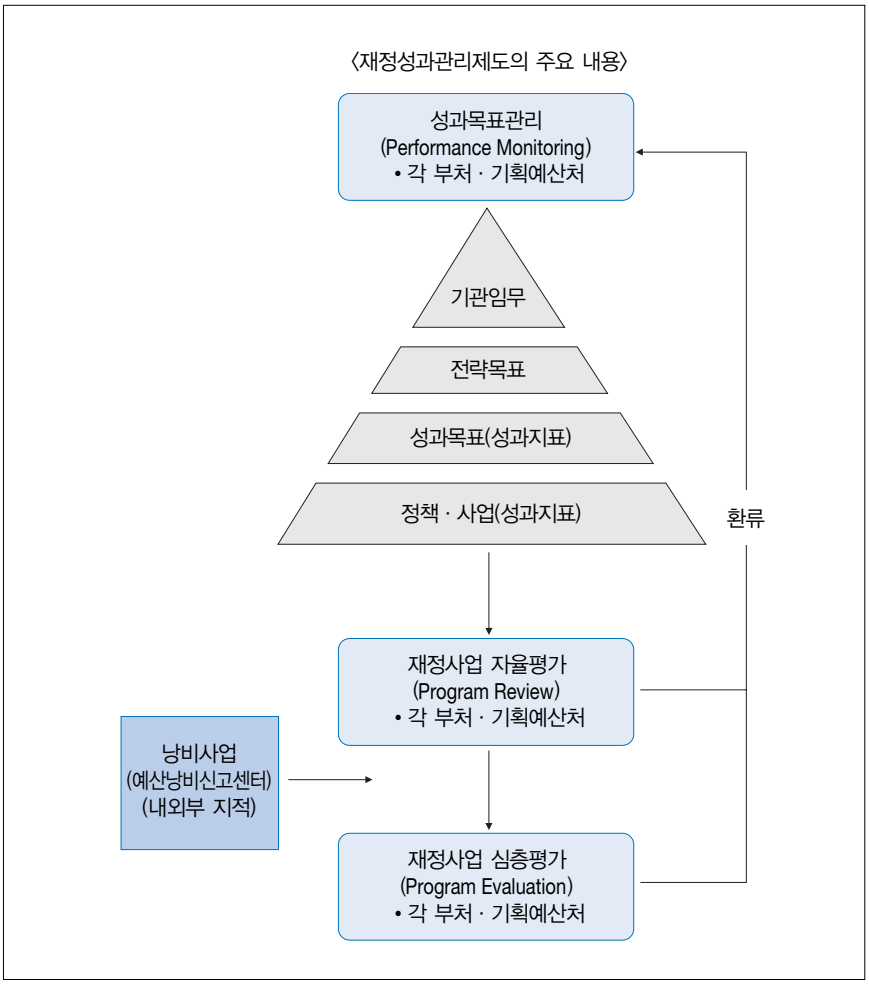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나. 재정성과관리제도와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평가단위의 설정에 유의한다면 기존의 성과관리 제도에 양성평등정책사업이 용이하게 포함될 수 있다.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틀 내에서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특히 재정성과관리제도 중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예산에의 환류도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성 인지 예산이 이 제도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성 인지 예산을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일반예산사업으로 분리해서 살펴보자. 성 인지 예산 중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일반사업들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대부분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비교적 용이하게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틀 내에서 평가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예산의 경우 '05~'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항목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을 비교할 경우 소수만이 재정사업자율평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0]. 양성평등정책 예산이 재정사업자율평가에 포괄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비예산사업이 많거나, 예산 구조상 양성평등정책 예산사업으로 분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통해서 성 인지 예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예산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사업자율평가 항목에 성 인지적 관점을 추가로 도입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항목을 도입한다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제도에서도 항목은 있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일반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 있어서도 일선 부처가 제출하는 성과지표나 목표치에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양성평등정책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잘 설정한다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통해 관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평가단위의 설정에 유의한다면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에 양성평등정책사업이 용이하게 포함될 수 있다.

10) 2005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05~07 재정사업자율평가 항목 비교는 박노욱 · 원종학(2007) 참고

성 인지 예산의 경우 성과관리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Ⅳ. 성 인지 예산 성과관리체계(안)

지금까지는 성과관리의 성격을 가진 기존의 제도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들이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목적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여성기본정책,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성 인지 예산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은 기존의 여성기본정책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제도들이 이미 살펴본 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양성평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정부업무평가제도 안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주요 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성 인지적 관점의 평가 부문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논의할 때 주요 쟁점은 효과적인 성과정보의 생산 가능성과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한 이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성 인지 예산의 경우 성과관리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 특정예산과 양성평등예산의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여 평가단위를 제대로 설정하면 성과관리체계 내에 용이하게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예산의 경우는 대상의 선정, 분석이슈,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관리 등 다양한 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 이론이나 사례가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를 논할 때 일반예산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 인지 예산의 문제의식이 바로 일반예산의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성과관리 대상으로서의 성 인지 예산의 범위에 대해 논하고, 양성평등예산과 일반예산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논하고 효과적인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1. 성과관리 대상으로서의 성 인지 예산

정책과 예산사업을 동시에 보게 되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성과관리대상으로서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비예산정책사업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성별영향평가는 예산사업과 정책의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다. 양자 모두 포함된 형태의 평가 및 관리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된 형태의 관리체계가 가지는 장점은 정책과 예산사업을 광범위하게 분석함으로써 예산사업만을 분석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과 예산사업을 동시에 보게 되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예산사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 소요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사업 대안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만을 관리하게 되면 비예산 정책과 예산사업 간의 보완 또는 대체 가능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11]. 그러므로 정책사업과 예산사업을 종합적으로 성과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성별영향평가의 실제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보가 미비한 상태로 정책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하게 되면,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평가결과를 환류시키는 부분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의 목적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성별영향평가제도 자체를 그대로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성 인지 예산의 범위에 따르면 성 인지 예산이란 양성평등사업(성 특정 사업과 양성평등 목적의 사업)과 일반예산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평등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 양성평등이라고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단위가 적절하게만 설정된다면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평가되고 관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과 한 단위로 묶어져서 평가를 받을 경우, 양성평등사업이 별도로 평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발명교육사업이 평가 단위이고 발명교육 내에 학생발명교육사업과 여성발명교육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성발명교육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발명교육사업의 목표가 교육대상자의 발명에 대

11) 현재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체계는 예산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성과관리를 주관하고 주요 정책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양 부분을 분석해 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사업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러한 중복의 문제뿐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비예산정책과 예산사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성과관리대상으로서의 성 인지 예산은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예산 정책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양성평등 사업과 일반예산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 인식 전환과 발명 촉진에 있으므로, 특정 성인여성 대상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의 목적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목표에 양성평등의 목적이 함몰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 단위의 설정 문제에 유의한다면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양성평등예산은 관리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의 수혜대상이 이질적인 경우, 각 재정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 중심의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일반예산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과관리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과제이다. 먼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 행정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편익을 염두에 두면 모든 예산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소지가 뚜렷한 예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분석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예산사업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다년도에 걸쳐 분석해 보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대상 예산의 선정뿐 아니라 실제 분석과 평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행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실효성 있는 일반예산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정책입안 및 결정 과정, 정책집행 과정 그리고 실제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입안과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집행 과정의 평가도 용이하지 않고, 평가의 궁극적 목표인 정책의 영향 평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의 영향평가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성별 데이터의 부재뿐 아니라 성별영향평가가 절대적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의 정책적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양성의 정책적 수요의 차이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연구과제이다. 기존의 일반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평가가 난제인 점을 고려하면,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일반예산의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요약하면 성과관리대상으로서의 성 인지 예산은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예산 정책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양성평등 사업과 일반예산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양성평등사업은 기존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일반

예산사업은 기존의 성별영향평가를 개선하여 제대로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양성평등사업의 경우는 양성평등의 목적에 따라 예산사업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일반예산사업의 경우는 점진적인 또는 선택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에서 미비한 부분인 예산편성 과정에의 환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성과관리와 미시적 차원의 성과관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2. 양성평등 예산의 성과관리

양성평등사업의 성과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양성평등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하여 양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성과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상 선정에 있어서 모호함이나 어려움은 작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 구체적 사업이나 정책이 양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데이터의 존재 여부와 평가 방법론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반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양성평등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성과관리와 미시적 차원의 성과관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성과관리는 양성평등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를 주요 분야별로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사업별로 미시적인 성과관리에 치중하게 되면 실제 양성평등의 거시적 상황이나 양성평등정책의 수요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기 쉽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립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같은 형태를 활용하여 주요 분야의 양성평등 관련 지표 체계를 개발하여 거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성과관리는 주요 양성평등사업을 사업별로 성과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는 평가단위의 설정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에 따라서는 양성평등사업 자체를 평가단위로 삼는 것보다는 상위의 다른 목표의 프로그램하에 양성평등 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단위사업이나 세세항 단위의 사업인 특정 양성평등사업이 다른 사업과 같이 묶여서 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사업 대상이 다른 하부 사업들과 묶여서 평가를 받는 경우 각각의 사

일반 예산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가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수립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업에 대한 성과정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소개한 발명교육 사업의 예를 생각해 보자. 재정사업자율평가 과정에서 발명교육 사업 자체가 평가단위로 설정되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하부 사업인 학생발명교육 사업과 여성발명교육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이 다르므로, 각 하부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가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양성평등사업이 평가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양성평등사업을 각 분야별로 통합해서 분석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평가단위로 설정되지 않고 하부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양성평등사업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평가단위에 대한 설명만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사업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를 취합하게 되면, 하부에 묻혀 있는 사업의 경우 누락되기 쉽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면 양성평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의 설정 문제로 인하여 일부 양성평등사업이 분석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도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해 별도로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도 검토할 사항이다. 미국의 PART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부처사업(cross-cutting program)의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다부처사업의 하나로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특히 양성평등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다부처사업의 평가결과를 필요에 따라 도출해 낸다면 양성평등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예산의 성 인지적 성과관리

일반 예산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가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수립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평가대상의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수집과 평가 방법론까지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별영향평가가 일반정책이나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학계의 주장대로 성 인지 예산을 학습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이러한 학습과정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학습과정으로서의

제도 운영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업담당자나 의사결정자에게 적절한 유인이나 동기 부여가 없이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의사결정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어야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의사결정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어야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하나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평가 항목의 하나로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담당자들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영향을 점검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평가가 실효성이 전혀 없어서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시행 초기에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된 적이 있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거의 무시되어 평가 항목에서 바로 사라진 경우가 좋은 예이다. 일반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기준이나 방법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 항목만 포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기존의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시작한 제도이므로 시간을 두고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평가에 대한 하부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학습효과도 제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일반예산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일반예산을 유형화시켜 성별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일반예산사업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해 주어야 실효성 있는 성 인지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제도의 하나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부처에게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이지만 평가의 목적에 있어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업무평가는 부처의 성적을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일반 예산사업 평가는 예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운영을 개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하자는 목적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방법론이 충분히 개발되기 이전에는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업무평가의 한 분야로 성 인지 예산의 성과평가가 도입된다면 부처의 행정부담은 커지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주로 산출이나 과정지표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부처의 입장에서는 왜곡된 행동을 할 유인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방법론이 충분히 개발되기 이전에는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반예산의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표 Ⅳ-1〉에 요약하였다.

〈표 Ⅳ-1〉 일반 예산의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방안

관리 방안	장점	단점	종합의견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항목에 성별영향평가 항목 추가	정부의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성별영향에 대한 결과를 점검할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없이는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음(균형발전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이 제도 초기에 삽입되었으나 평가 실익이 없어 삭제된 전례가 있음)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결과 축적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제도 도입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일반예산의 성과관리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음	일반예산의 성과관리를 포괄적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학습기간을 두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임.	현실적인 방안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성별영향평가 부문을 추가	성별영향 평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기존 성별영향평가가 결과 중심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출이나 과정중심의 평가가 될 확률이 높음. 부처의 왜곡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평가의 실익보다 왜곡된 행동의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4.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표 Ⅳ-2]에 요약하였다. 양성평등 예산에 대해서는 거시적 성과관리 틀을 통하여 여성정책의 정책적 수요와 진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될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일반예산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로서는 당장 실효성 있게 일반예산을 포괄적으로 성과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기존의 성별영

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서 일종의 학습과정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한 이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된다[12].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서 일종의 학습과정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2〉 성 인지 예산 성과관리체계

성인지 예산의 범주	성과관리 방안	
양성평등예산	거시적 모니터링	•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개선을 통해 거시적 성과관리체계 수립 • 분야별 정책적 수요 파악에 활용
	미시적 성과관리	•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활용 • 평가대상에서 양성평등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려 • 주요 이슈에 따라 다부처사업(cross-cutting program) 평가를 필요에 따라 병행할 수 있음
일반예산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축적 • 사업유형별 성 인지 예산 성과평가 매뉴얼 개발 • 향후 일반 예산의 성 인지적 평가제도 도입	

KIPF

<참고문헌>

김경희, 『양성평등정책예산 제도화 연구』, 2006.

박노욱 · 원종학, 『성 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개발』,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노욱,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평가」, 『재정포럼』 9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7.

여성가족부, 『2006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007.

여성가족부, 『2007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07.

여성가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5년도 시행실적 및 2006년도 시행계획』, 2006.

여성가족부, 『2006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중앙행정기관)』, 2007.

12) 성 인지 예결산서의 제출은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성과관리는 예결산을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제도 발전을 위한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가족부, 『2006년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서』, 2006.
여성가족부, 『200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평가 결과보고서』, 2007.
Sharp, Rhonda, *Budget initiative within a framework of performance oriented budgeting*, 2003.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조세정책 •

中 투자기업, 10년 안 돼 청산땐 감면받은 세금 반납해야

중국 투자기업 A사는 최근 경영악화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국에서 사업하다 지난 8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중국 내 외국투자기업은 첫 5년 동안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 청산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중국에서 사업하던 국내 기업들이 경영난을 맞아 철수하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마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 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남아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가 나빠져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첫 2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 재투자일로부터 청산 개시일까지 5년 이하이면 재투자세액환급분도 반납해야 한다. 자산의 무상양도 등 중요한 자산거래도 청산 6개월 전에 완료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코너를 마련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청산절차, 청산관련 세금 및 신고방법 등 세무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청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진출 기업의 청산과 관련된 핫라인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02-397-1404), 중국 베이징 세무관(001-86-10-8531-0843 · hwangjae-1@hanmail.net)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는 1만 9,525건, 207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 중 건수로는 46.7%, 금액으로는 2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對)중국 투자 중 건수 기준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이 95.6%에 달한다.

[매일경제신문 2008-02-05]

美, 세금 잘 낸 불법체류자들, 세금환급에서 제외되나

미 의회가 경기부양책 실행에 합의, 조만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회와 국세당국 간 불법체류자들에게 세금환급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의회와 행정부로서는 30일 경기부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세금환급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으로서는 환급의 공평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의 항의에 답변할 여지가 없어 고민중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꼬박꼬박 세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금납부자들에 대한 환급조치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신분자들이 갖는 사회보장번호는 없으나 개인별 세금계좌 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 왔다.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약 70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많은 수가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세금수입 면에서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납부자인 이들에게 불법체류자라 하여 환급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받기만 하고 혜택은 없다"는 구조가 돼 세금환급의 공평성에 어긋나며,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이민당국과 국세청 간 신분관련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경우 신분의 합 · 불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별 세금납부 계좌만 개설해 납부할 경우 나서서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우리는 이민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득이 생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적법한 비율의 세금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으로 유지되는 나라 미국에 체류하러 온 불법이민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둬야 이후 합법신분을 받게 될 때 평가에서 과거 소득에 대한 추징을 당하지 않고, 미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기에 숨어서 지내는 불체자들도 세금만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의 경기부양책 관련 의원들은 물론 행정부나 금융계 쪽에서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의원들은 법적으로 볼 때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세금환급은 법정신에 어긋나고 사회정식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의 현실과 법정신과 상충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31일 중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2008-01-31]

"외자 유치가 최우선"...동유럽 '일률과세' 러시

-올해, 불가리아 · 알바니아 가세, 기업 유치, 지하경제 축소 목표-

옛 공산주의 국가인 중 · 동부 유럽 각국이 해외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앞다퉈 '일률과세(flat tax)'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률과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예측성과 간편성을 높이는 반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진세 효과도 가지고 있다.

29일 「부다페스트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유럽 최빈국 중 하나인 알바니아는 올 1월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10%로 획일화하는 일률과세제도를 도

입했다. 이로써 에스토니아가 1994년 처음으로 일률과세를 도입한 이후 중 ·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와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총 14개 국가에서 일률과세를 시행하게 됐다.

일률과세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그루지야 · 마케도니아 12%, 러시아 · 우크라이나 13%, 세르비아 14%(법인세 10%), 몬테네그로 · 체코 15%(법인세 각 9%, 21%), 루마니아 16%, 슬로바키아 19%, 에스토니아 21%(법인세 15%), 리투아니아 24%(법인세 15%), 라트비아(25%) 등이다.

일률과세는 역진세 성격으로 인해 서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적인 개념에 불과했던 제도였지만 지금은 동유럽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는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3개 항목의 세율을 모두 통일, 명실상부한 일률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해외 대기업 투자 유치가 가장 큰 목적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이에 비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곳보다 당연히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를 선호한다.

일부 국가들은 일률과세는 실시하지 않지만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기도 한다. 알바니아는 이번 세제개혁으로 법인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보스니아 연방은 무려 30%에서 10%로 떨어뜨렸다.

일률과세는 또 조세에 대한 예측이 쉽고 납세도 간편해 세금관련 제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고율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조세저항이나 조세회피도 훨씬 적어 중장기적으로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다.

PWC의 한 조세 전문가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지하경제가 급격히 발달하게 된 중 · 동유럽 국가들은 세수 확보와 외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복안으로 일률과세를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재정적자가 심각한 나라들은 일률과세를 도입하고 싶어도 쉽게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일률과세가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내다보며 결과가 불확실한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일부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률과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헝가리는 주변 국가들과의 외자 유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버티고 있다.

[연합뉴스 2008-01-29]

日교토대, 신학기부터 '학내 환경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부와 연구과 등에 일정 비율의 환경부과금을 검토해온 일본 교토(京都)대학이 4월 신학기부터 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한 '학내 환경세'를 도입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経)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교토대학은 연구시설 확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작년 4월부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2%로 설정, 전기 · 가스 사용량 줄이기, 공조기 · 조명시설 교체 등을 검토해왔다.

교토대가 추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진예산은 연간 2억 4,000만엔으로, 대학본부와 50개 학부, 연구과가 50%씩 부담하며 각 학부와 연구과는 사용한 광열비의 4~5%를 납부한다.

일본에서는 환경세 도입과 관련한 구체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도쿄

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세 도입에 대해 오시마 고이치로(大嶌幸一郎) 교토대환경안전보건기구장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논의에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세가 학내 목적세로 징수되지만 결과적으로 각 학부의 시설투자에 환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8-01-22]

재정정책 •

부시, 2009년도 예산 3조달러 요청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9회계연도에 집행할 총 3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4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에는 협력하고 있지만,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부시 행정부와 의회 간 치열한 예산 공방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2009년도 국방예산으로 5,150억달러를 편성하는 이외에 수개월 간 우선 집행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700억달러를 따로 요청했으나 의회가 이를 승인할지 불투명하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2008회계연도에도 이라크 전비로 1,900억달러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700억달러만 통과시킨 뒤 나머지 예산은 이라크 사태 진전과의 연계를 주장해 진통을 겪고 있다.

부시는 또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년층과 장애자,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비를 대폭 감축하는 등 국방분야 이외 부문의 긴축예산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은 소외층 의료지원 축소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부시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펜스 설치 비용으로 7억 7,500만달러, 국경순찰 강화 비용으로 4억 4천만달러, 불법체류자 단속비용으로 30억달러를 배정하는 등 불법이민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 외교관 인력의 장기 증원에 따른 재원을 늘리는 등 국무부 예산으로 82억달러를 할당했다.

부시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세원을 확대해 2012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이룬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재정적자가 4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당분간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8-02-04]

'수렁에 빠진 미 경제' 집중 거론
-부시 '국정연설' 뭘 담았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28일 국정연설은 '수렁에 빠진 대테러전' 대신 '수렁에 빠진 미국 경제'가 핵심 화두가 됐다. 단골로 등장하던 '테러', '민주주의', '자유'와 같은 표현들의 공백을 '경제'가 채웠다.

부시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은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라 전체에서 식탁 위에 올라왔다"며 경제가 난관을 만났음을 시인했다. 이미 공개된 세금환급을 비롯한 1,46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의회에 부양안의 이른 처리를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연설이 앞서 여섯 차례의 국정연설에 견줘 경제에 가장 집중한 내용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쪽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혜택을 부양책에 담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의회 구성원들은 세금을 올리려는 어떤 법안도 내 책상에 올라오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상원 재무위가 행정부와 하원이 합의한 경기부양책과는 딴판인

자체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즉각 면박을 당한 꼴이 됐다. 1,560억달러 규모의 상원 안은 행정부-하원 안보다 수혜 범위를 넓혀 노인과 실업자를 좀 더 배려했다. 부시 대통령은 "부양책을 키우려는 유혹"을 경고했지만, 새 안이 나와 부양책 조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라크 미군 증파 계획을 밝힌 부시 대통령의 연설 분위기가 이번에는 달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과거의 사회보장제도 재구축, 이민 · 조세 문제에 대한 거창한 꿈이 사라진 연설"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잠잠한 이라크를 언급하면서는 미군 증파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성과"라고 자찬했다. 미군 2만여명이 수개월 안에 철군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추가 철군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해 신규 주택 판매가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26%의 낙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널드는 12월 미국 점포들의 판매가 전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침체의 그림자가 발견된 것이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연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이는 부시 대통령의 연두연설과 대조된다. 지난주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연준 공개시장위원회가 30일에 또 금리를 내리느냐에 세계의 눈길이 쏠려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지는 가운데, 0.5%포인트 추가 인하 예상이 우세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2008-01-30]

美당국, 채권보증사 구제 위해 150억달러 기금 요구

뉴욕 보증국 에릭 디날로 국장이 채권보증사 구제안 마련을 위해 은행 관계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50억~150억달러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최근 채권보증사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하향조정됨에 따라 이들이 보증서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도 떨어졌다. 그리고 이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1,000억달러 이상을 상각 처리한 은행에 또 다른 위기로 작용했었다.

이에 따라 디날로 국장이 앞장 서 채권보증사 구제안 마련을 위해 뉴욕에 있는 페렐라와인버그를 재정 고문으로 임명하고 지난주 익명의 은행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2008-01-29]

美, 1,500억달러 경기부양책...실효성은 '글쎄'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가 24일(현지 시각) 1,500억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경기부양책은 크게 개인, 기업, 모기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안과 무료식사권 제공 등은 빠져 있어 민주당과 노동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 개인 · 기업 · 모기지 3단계 정책

우선 개인에 대한 세금환급 정책은 1만 1,70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소득세를 300달러 이상 낸

납세자는 6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0달러를 받게 된다. 또 자녀 1인당 300달러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300달러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합산소득이 17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저소득층에 한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 앞서 제시된 부양책에서 세금환급 대상을 납세자로 한정해 세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모순도 해결됐다.

기업은 올해 장비 구입 등의 투자액에 한해 세금을 50%까지 공제받는다.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소기업의 경우 공제액은 더 커진다. 올해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기업은 앞서 발행된 세금고지서는 무효가 된다.

또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한도를 현재 41만 7,000달러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 한도는 대도시 지역 주택의 중간값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최대 73만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기지 한도 확대를 통해 대도시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의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최대 한도를 넘는 점보모기지의 금리는 더욱 높아지고 받기도 어려워질 예정이다.

◆ 민주 · 노동계 실망하는 기색 역력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걸고 넘어질 수 없었던 탓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안과 무료식사권에 관한 안이 빠지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의 빌 사무엘 입법 담당도 경기부양책 전체 규모 1,500억달러 가운데 법인세 공제가 500억달러 정도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경기부양책을 기업의 이익에 강탈당한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문제점

정부와 의회의 경기부양책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공제안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 이윤이 증가할 때 비로소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공제해 부담을 줄여준다 해도 투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헌터 대학의 경제학 교수 하워드 처닉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금 공제보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세금환급으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새롭게 추가된 모기지업체의 대출한도 확대 역시 문제다. 금융권이 아직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로 허덕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작정 모기지 한도를 확대하게 되면 부실 모기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택 구입자들의 재융자가 어려워져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번 모기지 대출한도 확대는 이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

냉키 의장이 기준금리를 0.75%p 내린 데 이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늘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온 그린스펀 전의장 재임 당시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단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환급을 위주로 하는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새로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2008-01-25]

프랑스, 고강도 개혁 착수

-사르코지 대통령 316개 개혁안 수용-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성장촉진위원회(아탈리위원회)가 제안한 300대 국가 개혁안을 수용해 고강도 프랑스 개조 작업에 착수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23일 아탈리위원회에서 '프랑스 개혁을 위한 316개 제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적극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에는 고강도 개혁 처방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제시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탈리위원회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2012년까지 새 일자리를 15만개 만들어 8%대 실업률을 5%로 낮추고, 2%대 성장률을 매년 1%p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6%에서 55%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경제 부문에서는 △주35시간 근무제 폐지 △65세 정년제한 철폐 △약국과 택시 등 허가제 업종 전면 자유화 △백화점과 레스토랑, 영화관 등 가격 완전 자유화 △기업의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교사의 능력평가제 도입 △대학 10여 개에 민간재원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민정책 개혁도 제안했다.

[매일경제신문 2008-01-25]

정책흐름

- 2007년 국세징수 실적
-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2007년 국세징수 실적(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관련)

* 이 자료는 2008년 2월 5일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07년 국세징수 실적(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관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7년 국세수입은 161조 4,591억원으로
- 2006년 국세실적(138조 443억원) 대비 17.0% 증가하였음
- – 이월세수 및 '06년 말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급증한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 등 일시적 특이요인(6조원 수준)을 제외할 경우 '06년 실적 대비 12.6% 증가한 수준

* 총국세 증가율 : ('03)10.3%→('04)2.7%→('05)8.2%→('06)8.3%

■ 2007년 세입예산(147조 3,025억원) 대비로는 9.6%(14조 1,566억원) 증가하였으나,
- 특이요인을 제외할 경우 금년 초과세수는 '07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수준임

* 세수추계 오차율 : ('03)0.9%, ('04)△3.5%, ('05)△2.4%, ('06)2.0%

■ '07년 세수초과액(+14.2조원)은
- 우선 '07년 예산에서 계획되었던 국채발행 규모(8.0조원) 중 1.3조원은 발행하지 않았으며
- 나머지 초과세수는 '07년 결산 후 국가재정법의 세계잉여금 처분 절차에 따라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임

1 2007년 세입 개괄

■ 2007년 총국세 규모는 161조 4,591억원으로
- 2006년 국세실적(138조 443억원) 대비 17.0%(23조 4,148억원) 증가한 수준
- – '06년 말이 공휴일이여서 '07년으로 납기가 이월된 교통세 등 이월세수(3.1조원)와
- – '06년 말 급증한 부동산 거래 등으로 양도소득세 증가(3조원)의 일시적 특이요인을 제외할 경우 '06년 실적 대비 12.6% 증가한 수준

(단위 : 조원, %)

구 분	'06년 실적(A)	'07년		'06년 실적 대비		'07년 예산 대비	
		예산(B)	실적(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138.0	147.3	161.5	23.4	(17.0)	14.2	(9.6)
일반회계	132.7	141.6	155.4	22.7	(17.1)	13.8	(9.7)
특별회계	5.4	5.7	6.1	0.7	(13.0)	0.4	(7.0)

〈회계별 증감 사유〉

■ 일반회계는 155.4조원으로 2006년 실적(132.7조원) 대비 17.1% (22.7조원) 증가
- 소득세(7.9조원) 및 법인세(6.1조원), 부가가치세(2.8조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1.9조원), 종합부동산세(1.1조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특별회계는 6.1조원으로 2006년 실적(5.4조) 대비 13.0% (0.7조원) 증가
- 주세가 △0.1조원 감소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가 0.8조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세목별 증감 사유〉

■ 소득세 : 7.9조원 증가

• '06년 말 부동산 거래량 급증, 경기회복세 및 과표양성화, 펀드가입 증가, 임금상승 및 고액연봉자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개인양도건수 증가율(%) : ('06연간)11.1, ('06.11)51.1, ('06.12) 48. 8
* '07년 주택가격 상승률 : 9.0%, '07년 토지가격 상승률 : 4.7%
* 신용카드 사용액(조원) : ('06)214.8(12.8%↑)→('07e)250 (16.4%↑)
* 현금영수증 사용액(조원) : ('06)30.6(64.5%↑)→('07e)50.6 (65.4%↑)
* 간접투자기구 설정잔액 증가율(%) : ('06)13.1 ('07)16.5
* 과표 8천만원 초과 근로자(천명) : ('03)31→('04)41→('05)53 →('06)69
* 명목임금상승률(%) : ('04)6.0→('05)6.6→('06)5.7→('07. 10월 누계)5.8

■ 법인세 : 6.1조원 증가

• 기업실적 호전과 금리 및 법인저축성 예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12월 말 결산 흑자법인 당기순이익(조원) : ('06. 3월 신고분) 117.0, ('07. 3월 신고분) 121.0
* 법인저축성예금(조원) : ('06. 10누계) 1,721 ('07. 10누계) 1,846, 7.3%↑
* 회사채이자율(3년 만기 AA-, %) : ('06)5.17→('07)5.70, 10.3%↑

■ 상속 · 증여세 : 0.5조원 증가

• 부동산 · 주식 등 가격상승과 양도세 강화에 따른 증여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 : ('06)18.4 → ('07)11.6
* 주가(KOSPI) : ('06말)1,434→('07말)1,897
* 주가(KOSDAQ) : ('06말)606→('07말)737

■ 부가가치세 : 2.8조원 증가

•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민간소비 증가율(%) : (07.1/4) 4.1→(2/4) 4.2→(3/4) 4.7
* 수입액(통관기준, 억달러) : ('06실적) 3,094 ('07실적) 3,564 (15.2%↑)
* 수출액(통관기준, 억달러) : ('06실적) 3,255 ('07실적) 3,719 (14.3%↑)

■ 특별소비세 : 0.3조원 증가

• 특별소비세 대상 유류분 소비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 증가 및 '07년으로 이월된 세수(0.2조원)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증가

* 자동차 판매량(만대) : ('06) 93.5 ('07) 98.6 (5.5%↑)
* 등유 출고량(천배럴) : ('06) 31,597 ('07) 26,132 (△17.3%↓)

■ 증권거래세 : 0.9조원 증가

• 증시 호조에 따른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

* KOSPI 증권거래대금 증가율(%) : ('06)23.1→('07)79.0
* KOSDAQ 증권거래대금 증가율(%) : ('06)8.4→('07)26.6

■ 관 세 : 0.6조원 증가

• 환율하락 및 한 · 아세안 FTA 양허세율 등에 따른 실효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환율(원/달러) : ('06) 955.2→('07) 929.4
* 수입액(통관기준, 억달러) : ('06실적) 3,094 ('07실적) 3,564 (15.2%↑)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1.9조원 증가

•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

* 휘발유 출고량(천배럴) : ('06) 59,946 ('07) 62,427 (4.1%↑)
* 경유 출고량(천배럴) : ('06) 142,682 ('07) 145,513 (2.0%↑)

■ 종합부동산세 : 1.1조원 증가

•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 : ('06)18.4→('07)11.6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06)16.4→('07)22.8

*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 ('06) 70%→('07) 80%

■ 주세 : △0.1조원 감소

• 주류출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맥주세율 인하(80%→72%)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 맥주 : (06) 1,822천㎘→(07) 1,976천㎘ (8.5%↑)

* 소주 : (06) 943천㎘→(07) 990천㎘ (5.0%↑)

■ 농어촌특별세 : 0.8조원 증가

• 농특세가 부가되는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기인

2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06실적	2007년		'06실적 대비		'07예산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 총 국 세	138.0	147.3	161.5	23.4	(17.0)	14.2	(9.6)
• 소 득 세	31.0	32.8	38.9	7.9	(25.3)	6.1	(18.5)
• 법 인 세	29.4	30.5	35.4	6.1	(20.6)	4.9	(16.1)
• 상속증여세	2.4	2.6	2.8	0.5	(18.9)	0.2	(9.6)
• 부가가치세	38.1	41.2	40.9	2.8	(7.5)	△0.2	(△0.5)
• 특별소비세	4.9	5.2	5.2	0.3	(5.3)	△0.0	(△0.8)
• 증권거래세	2.5	2.3	3.5	0.9	(37.3)	1.1	(49.2)
• 인 지 세	0.6	0.6	0.6	0.0		△0.0	(△1.4)
• 과년도수입	2.6	2.4	3.0	0.4	(15.6)	0.5	(21.9)
• 교통·에너지·환경세	9.6	11.3	11.5	1.9	(19.5)	0.1	(1.2)
• 관 세	6.9	7.1	7.4	0.6	(8.1)	0.3	(4.6)
• 교 육 세	3.4	3.7	3.9	0.4	(12.8)	0.1	(3.1)
• 종합부동산세	1.3	1.9	2.4	1.1	(81.9)	0.5	(27.8)
• 주 세	2.4	2.4	2.3	△0.1	(△5.9)	△0.1	(△4.6)
• 농어촌특별세	3.0	3.3	3.8	0.8	(28.4)	0.5	(15.5)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이 자료는 2008년 2월 5일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과에서 발표한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화) 15:00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양인석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음

*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로서, 이의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음

■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결과

- 일반회계는 세입이 171.2조원, 세출이 154.3조원으로 16.8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5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5.3조원이며
- 특별회계는 세입이 44.9조원, 세출이 42.6조원으로 2.3조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1조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원임

■ 정부는 총세입부 · 총세출부를 마감한데 이어,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세계잉여금 발생 사유 및 사용계획〉

■ 세계잉여금 발생 사유를 보면

- 세입 측면에서 일시적 특이요인(약 6조원)*, 경기회복 및 그간의 과표양성화 노력 등에 따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에 기인하며

* '06년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07년으로 일부 세수가 이월되었고,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 등을 앞두고 '06년 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가 증가

- 세출 측면에서 예비비 미사용(1.2조원),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최근 유가급등,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등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 재정수지를 개선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수상황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방교부세 · 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임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마감 결과

1 세입세출 실적 총괄

■ 총세입액 216조 355억원, 총세출액 196조 9,047억원, 이월액 2조 6,469억원으로 16조 4,83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단위 : 억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 잉여금 (C-D)
총 계	2,160,355	1,969,047	191,308	26,469	164,839
일반회계	1,711,721	1,543,309	168,413	14,985	153,428
특별회계	448,633	425,738	22,895	11,484	11,411

■ 세계잉여금은 2006년의 2.4조원보다 14.1조원 증가

• 일반회계가 14.0조원, 특별회계는 0.1조원 증가

(단위 : 조원)

구 분	2006(A)	2007(B)	증 감(B-A)
합 계	2.4	16.5	14.1
일 반 회 계	1.4	15.3	14.0
특 별 회 계	1.0	1.1	0.1

2 일반회계 부문

■ 세 입

•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56.5조원 대비 14.7조원(9.4%) 초과 징수

– 국세수입*이 13.8조원 증가, 세외수입이 0.9조원 증가

* 양도세 4.1조원, 법인세 4.9조원, 증권거래세 1.1조원, 종합부동산세 0.5조원 등

• 세수 호조 전망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1.3조원 축소하는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A)	실적(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156.5	171.2	14.7	9.4
국 세 수 입	141.6	155.4	13.8	9.7
세 외 수 입	14.9	15.8	0.9	6.0

■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8.4조원 대비 97.4%인 154.3조원 지출

– 사회복지, 보건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R&D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역점

– 기능별로는 일반행정, 교육, 국방, 사회복지 순으로 지출

〈기능별 지출실적〉

(단위 : 조원)

구분	예산 현액 (A)	지 출 액							
		계(B)	일반 행정	교 육	국 방	사회 복지	수송 교통	공공질서 기타	집행률 (B/A)
금액	158.4	154.3	33.1	30.4	24.0	15.4	14.4	37.1	97.4%
구성비(%)		100.0	21.4	19.7	15.6	9.9	9.3	24.0	

3 특별회계 부문

■ 세 입

• 16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4.4조원 대비 0.4조원 초과 징수

– 농어촌구조개선(0.3조원), 교통시설(0.2조원)의 세입이 증가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A)	실적(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44.4	44.9	0.4	1.0
기타(11)	37.0	36.9	0.0	0.0
기업(5)	7.5	7.9	0.4	5.9

■ 세 출

•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5.5조원 대비 93.5%인 42.6조원 지출

–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0조원 대비 93.2%인 35.4조원 지출

– 5개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조원 대비 95.3%인 7.2조원 지출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현액(A)	집행실적(B)	증 감 (B-A)	집행률(%)
합 계	45.5	42.6	△2.9	93.5
기타(11) 기업(5)	38.0 7.5	35.4 7.2	△2.6 △0.4	93.2 95.3

3 불용 및 이월

■ 불 용

• 불용액은 총 4.4조원으로 전년(3.3조원)보다 1.1조원 증가

– 예비비(1.2조원), 농어촌구조개선(0.6조원)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0.4조원) 등에서 주로 발생

〈불용액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6(A)	2007(B)	증 감(B-A)
합 계	3.3	4.4	1.1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1.5 1.8	2.6* 1.8**	1.1 0.0

* 기획예산처(예비비) 12,265억원, 국방부 2,052억원, 방위사업청 1,731억원 등

** 농어촌구조개선 5,808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 3,626억원 등

■ 이 월

• 이월액은 2.6조원으로 전년(2.9조원)보다 0.3조원 감소

〈이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6(A)	2007(B)	증 감(B-A)
합 계	2.9	2.6	△0.3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1.7 1.3	1.5* 1.1**	△0.2 △0.1

* 국방부 0.6조원, 문화관광부 634억원, 농림부 556억원 등

** 농어촌구조개선 0.3조원, 국가균형발전 0.3조원, 교통시설 0.3조원 등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이 자료는 2008년 1월 31일 재정경제부 공자위사무국 의사총괄과에서 발표한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97. 11~'07. 12월중 공적자금은 총 168.4조원 지원하였으며, 이 중 90.0조원 회수, '07.12월 말 현재 회수율(누계) 53.4%*

* '07.11월 말 대비 0.2%p 증가, '06년 말 대비 3.2%p 증가

■ '07년중 1,448억원 지원, 5조 4,522억원 회수

• 주요 지원내역

– (예보) 소송에 따른 출연* 및 예금대지급 등 1,320억원

*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순자산부족분 사후정산 등

– (캠코) 소송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 사후정산 △872억원

– (정부) 신협중앙회 재정융자 지원 1,000억원

• 주요 회수내역

– (예보) 출자지분 매각* 및 출자기관 배당** 등 4조 3,660억원

* 신한지주－1조 1,148억원('07.2), 우리금융지주－9,168억원('07.6)

** 우리금융지주－3,771억원('07.4), 서울보증보험－3,522억원('07.7)

– (캠코) 부실채권 회수 등 8,407억원

– (정부) 출자은행 배당 2,455억원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지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168.4
회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90.0
회수율(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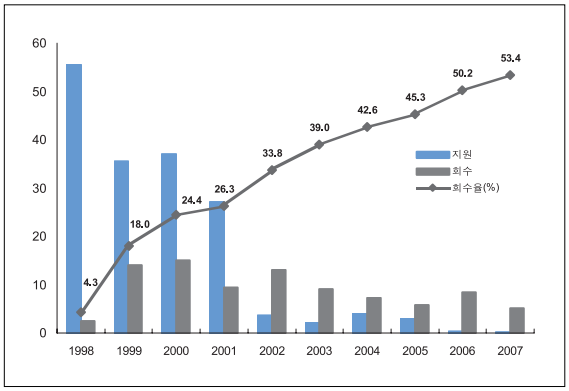

공적자금 통계자료

1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7. 12월 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7.8	3.2	7.4	6.7	17.1	42.2
공공자금	13.4	–	–	6.4	–	19.8
기타자금주)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주) 예보 · 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나. 금융권별

('97. 11월~'07. 12월 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2금융권	종 금	2.7	0.7	18.3	–	1.2	22.9
	증권 · 투신	10.9	0.3	0.01	2.0	8.5	21.7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0.1	–	4.9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6	30.3	3.0	11.7	79.1
해외금융기관 등		–	–	–	–	2.4	2.4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다. 기관별

('97. 11월~'07. 12월 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5	30.3	11.0	–	110.7
자산관리공사	–	–	–	–	38.6	38.6
정 부	11.8	–	–	6.4	–	18.2
한국은행	0.9	–	–	–	–	0.9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라. 연도별

('97. 11월~'07. 12월 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1/4	–	0.08	△0.06	–	0.02
	2/4	–	0.04	–	–	0.04
	3/4	–	0.04	△0.01	–	0.03
	4/4	–	0.004	0.05	–	0.05
	계	–	0.16	△0.02	–	0.14
누계		102.1	42.2	19.8	4.3	168.4

2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총괄표

('97. 11월~'07. 12월 말, 단위 : 조원)

구분	회수방법						
예금보험공사	출자금회수	파산배당 등	자산매각 등	–			소 계
	16.0	17.5	6.2	–			39.8
자산관리공사	국제입찰	ABS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6	5.1	2.5	12.7	9.5	10.3	41.6
정부	출자금회수	후순위채권회수	–				소 계
	2.0	6.6	–				8.6
계							90.0

나. 연도별

('97. 11월~'07. 12월 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계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등	자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1/4	1.12	–	0.28	1.40	0.11	0.13	1.64
	2/4	1.34	0.13	0.09	1.56	0.32	0.12	2.00
	3/4	0.53	0.22	0.15	0.89	0.10	–	0.99
	4/4	–	0.34	0.19	0.52	0.31	–	0.83
	계	2.98	0.69	0.70	4.37	0.84	0.25	5.45
누계		16.0	17.5	6.2	39.8	41.6	8.6	90.0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 이 자료는 2008년 1월 29일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에서 발표한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예산처는 1. 24(금) 제20차 범정부 BTL사업 T/F회의(팀장 : 김대기 재정운용실장)를 개최하여 '08년 BTL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금년도 BTL사업 한도 5.0조원 중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3.1조원 규모의 43개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음

- 국가사업(16개)은 군인아파트 · 사병내무반 등 군 주거시설 13개,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 소사~대곡철도, 한국기술교육대 기숙사 · 공학센터 등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27개)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 16개, 공공보건의료시설 · 문화예술회관 · 과학관 · 박물관 등 문화 · 복지시설 11개

*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 · 중등학교 신개축사업은 교육청의 Bundling 작업이 완료되는 2월중 대상사업 확정 예정

■ 금년에는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고 충실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 고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

- 고시시기를 앞당겨 육군 부평관사(475억원) 등 3/4분기까지 30개 사업, 1.7조원을 고시할 계획

* 3/4분기까지 고시실적 : ('07년) 39개 사업, 50.60%→('08년) 30개 사업, 69.8%

〈2008년 BTL사업 고시 계획〉

구 분	1/4~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사업 수(%)	10 (23.3%)	20 (46.5%)	13 (30.2%)	43 (100.0%)
• 고시규모	0.5조원	1.2조원	1.4조원	3.1조원

- '05~'07년 기 고시사업의 협약체결, 착공 등 사업추진을 가속화하여 실집행 규모를 4.2조원 수준으로 확대

* BTL 집행규모(조원) : ('05) 0.13→('06) 1.5→('07) 3.0→('08 계획) 4.2

■ 또한, 이번 T/F회의에서는 BTL 운영시스템 조기 정착 및 복합시설 활성화 등을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로 논의하였음

- 새로이 운영개시되는 시설*에 대해 운영표준모델 마련 및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 '08년 운영개시 : 국립대 기숙사 3건, 도서관 2건, 기능대 1건, 초중등학교 52건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실질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학교복합시설 등을 중점 발굴 · 시행할 계획

* 사업추진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교육청 · 지자체 · 중앙부처 간 협의체) 구축 및 국고보조 20%p 추가 지원 등 활성화 방안 시행

2008년도 BTL사업 대상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관리번호	대상사업	사업규모	한도액	비 고
합 계			31,985	국가사업+국고보조사업 +예비사업 한도액
■ 국가사업			17,307	
• 군인아파트		1,007세대	1,047	
08-국방-01	• 육군 부평관사	457세대	475	특전 9여단, 특임단
08-국방-02	• 육군 양구관사	550세대	572	2사단, 21사단
• 군인아파트+사병내무반		764세대 6동 5개대대	1,339	군인아파트 794억원 사병내무반 545억원
08-국방-03	• 육군 하남관사 및 생활관	380세대 6동	539	3군사, 1항공여단, 공군15비행단
08-국방-04	• 육군 홍천관사 및 생활관	384세대 5개대대	800	11기보사, 3군단본부
• 군인아파트+사병내무반 +독신자숙소		714세대 14동 1,183실	1,607	군인아파트 743억원 사병내무반 391억원 독신자숙소 473억원
08-국방-05	• 해군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독신숙소	490세대 1동 1,067실	1,016	해군1함대
08-국방-06	• 공군 부산관사 및 병영시설, 독신숙소	224세대 13동 116실	591	공군5비행단 해병1사단
• 사병내무반+독신자숙소		12동 29개대대 1,374실	3,165	사병내무반 2,616억원 독신자숙소 549억원
08-국방-07	• 육군 화천병영시설 및 독신숙소	10개대대 236실	897	7사단, 15사단, 27사단
08-국방-08	• 육군 양구병영시설 및독신숙소	6개대대 70실	510	2사단, 21사단
08-국방-09	• 육군 포천병영시설 및독신숙소	4개대대 90실	357	수기사, 1기갑여단
08-국방-10	• 육군 파주병영시설 및독신숙소	5개대대 40실	417	1사단, 2기갑여단
08-국방-11	• 해병 김포병영시설 및독신숙소	4개대대 785실	635	해병2사단
08-국방-12	• 공군 대구병영시설 및 독신숙소	12개동 153실	349	공군11비행단, 군수사, 방포교
• 사병내무반		3동	558	
08-국방-12	• 국직 용산생활관	3동	558	국방부 근무지원단
• 철도		19.6km	8,863	
08-건교-01	• 소사~대곡	19.6km	8,863	19.6km 복선전철 지자체 사업비 분담 25%
• 국민임대주택		680호	444	
08-건교-02	• 국민임대주택	680호	444	시범사업
• 기능대학 시설		1개소	284	

(단위 : 억원)

관리번호	대상사업	사업규모	한도액	비 고
08-노동-01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개소	284	공학센터 17,966㎡, 기숙사(4,300㎡)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3,155	
• 노후하수관거 정비		1,617km	11,579	
08-환경-01	• 인천광역시	81km	834	-대상처리구역 : 송도, 소래, 만수
08-환경-02	• 대전광역시	122km	1,063	-대상처리구역 : 대전천 좌 · 우안
08-환경-03	• 광주광역시	86km	996	-대상처리구역 : 중앙
08-환경-04	• 울산광역시	196km	1,145	-대상처리구역 : 용연, 온산, 언양
08-환경-05	• 김포시(경기)	126km	667	-대상처리구역 : 김포
08-환경-06	• 천안시(충남)	110km	579	-대상처리구역 : 천안
08-환경-07	• 횡성군(충남)	95km	578	-대상처리구역 : 횡성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08	• 진안군(전북)	60km	330	-대상처리구역 : 진안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09	• 여수시(전남)	56km	517	-대상처리구역 : 여수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10	• 경주시(경북)	97km	524	-대상처리구역 : 경주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11	• 김해시(경남)	76km	518	-대상처리구역 : 김해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12	• 양산시(경남)	57km	487	-대상처리구역 : 양산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13	• 진주시(경남)	124km	848	-대상처리구역 : 진주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14	• 통영시(경남)	70km	931	-대상처리구역 : 통영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08-환경-15	• 제주시(동지역, 제주)	95km	650	-대상처리구역 : 제주 -국고보조율 : 신설 50%, 개 · 보수20%
08-환경-16	• 제주시(읍면지역, 제주)	166km	912	-대상처리구역 : 제주 -국고보조율 : 신설 70%, 개 · 보수30%
• 박물관		1개소	336	
08-문화-01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지 8,595㎡ 연면적 12,330㎡	336	-영상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등 -국고보조율 : 30% (101억원)

(단위 : 억원)

관리번호	대상사업	사업규모	한도액	비 고
• 복합문화시설		1개소	425	
08-문화-02	• 의왕문화예술회관	부지 18,896㎡ 연면적 17,519㎡	425	지하2층, 지상2층 대 · 소극장, 미술관, 생활체육시설 국고보조율 : 31%
•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400	
08-복지-01	• 안성의료원	1개소	400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300병상 국고보조율 : 50%
•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	255	
08-복지-01	• 공립치매병원	4개소 (연면적 18,480㎡)	255	노인치매병원 -부산시립노인치매병원 (6,600㎡) -군산시립노인치매병원 (5,940㎡) -울진군립치매요양병원 (2,970㎡) -의령군립노인치매병원 (2,970㎡) 국고보조율 : 50%
• 과학관		1개소	160	
08-과기-01	• 사천 항공우주과학관	1개소	160	지상 3층 3,997㎡ 항공체험관, 우주체험관, 에너지관 -국고보조율 : 50% (80억원)
• 예비 사업한도 배정 (총예비한도액 1,523억원)		3개소	995[1]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 · 신치료기술지원센터(한도 405억원, 연면적 21,332㎡, 국고보조율 70%), 양평문화 예술회관(한도 200억 원 , 연 면 적 6,300㎡, 국고보조율 29%) 익산문화예술회관(한도 390억원, 연면적 10,610㎡, 국고보조율 30%) 추진

1」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잔여재원 : 528억원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경우 임대료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금액)은 사업규모 · 내용 변경시 재조정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일자리정보 One-stop서비스, 중복수혜 방지, 성과평가 기능 강화 -

* 이 자료는 2008년 1월 11일 기획예산처 일자리창출지원팀에서 발표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07년 말 현재 15개 부처가 103개 2.8조원의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보의 분산관리, 중복수혜 등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일자리사업 수혜자 이력관리가 가능한 67개 사업(2.1조원, 506천명)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먼저 구직자들에게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는 한편,

– 사업 참여자 개인별로, 언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중복수혜를 방지할 수 있고,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예산 집행실적 확인과 사업성과 통계기능 및 수혜자 직업이력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 고용보험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의 안정성 및 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그간 15개 부처가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간, 부처 간에 정보가 차단되는 등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다.

•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시행기관별로 제공함에 따라 구직자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고,

• 부처 간, 사업 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 또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적관리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 분석이 제한되어 예산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08년도에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획예산처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통합정보시스템은 일자리사업을 종합 · 관리하는 기획예산처가 계획하고, 노동부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 기존의 일자리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전산망, Work-net 등을 운영중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금번 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103개(2.8조원, 656천명) 일자리 지원사업 중 참여자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67개(2.1조원, 506천명)의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된다.
• 이미 부처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34개 사업은 웹 수집기를 통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33개 사업은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 운용할 계획이다.
• 통합시스템에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수혜내용 등을 3년간 소급('05년 이후 사업실적)하여 입력 · 관리하고,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업정보 및 추진실적도 입력하여 관리하게 된다.
※ 인프라 구축사업과 용역 또는 바우처 방식 등으로 추진되는 36개 일자리사업은 개인별 이력관리가 불필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대상에서 제외

■ 이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예산의 배분과 사업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DB에 의해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부처 간 정보의 연계가 가능하여 중복수혜를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 또한 관련부처나 사업수행 주체가 사용가능한 정보 및 통계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비교 · 분석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 이를 토대로 유사 · 중복사업의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편성 · 집행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DB구축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부처별	예산(억원)	
			'07	'08
1	문제해결형 연구지원	교육부	59	72
2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산자부	60	130
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아동복지 교사)	복지부	366 (206) (160)	511 (262) (250)
4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사업	복지부	26	37
5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교육부	172	2
6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여가부	2,472	2,994
7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여가부 여가부	27 (24)	56 –
8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아카데미)	청소년위	120	158
9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위	26	32
10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복지부	160	160
11	장애아동특수교육보조원	교육부	197	8
12	특수교육지원 인력확충	교육부	65	4
13	여성창업활성화	중기청	24	30
14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농림부	여가부	38 (19) (19)	182 (1,11) (71)
15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41	40
16	국민연금 상담요원 운영	복지부	172	177
17	통합복지 콜센터 운영	복지부	32	35

연번	사 업 명	부처별	예산(억원)	
			'07	'08
18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 장려금	노동부	384	611
19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	노동부	230	150
20	사회적 일자리 제공	노동부	1,215	1,407
21	의료급여 관리(사례관리사)	복지부	60	86
22	정신보건센터운영	복지부	88	104
23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복지부	50	103
24	자원봉센터운영 활성화	행자부	17	37
25	정보화마을프로그램매니저	행자부	20	23
26	예술강사 풀제 (분야별 예술강사 풀제운영지원)	문화부	233 (178)	290 (236)
27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부	(55)	(54)
28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체육활동)	문화부	143 (110) (33)	163 (124) (39)
29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문화부	15	25
30	도서관 등 문화시설 연장운영	문화부	104	102
31	숲가꾸기 (산림숲 가꾸기) (정책숲 가구기)	산림청	1,981 (435) (1,546)	2,478 (542) (1,936)
32	산림서비스 제공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산림청	442 (114)	592 (156)
33	(산림보호강화)	산림청	(328)	(436)
34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국립공원지킴이)	환경부	81 (81)	117 (84) (33)
35	5대강 환경지킴이	환경부	40	42
36	고궁연장운영	문화재청	17	6
37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문화재청	29	29
38	자활근로	복지부	2,594	2,594
39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복지부	155	304
40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노동부	347	224
41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산자부	100	80
42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	문화부	10	10
43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중기청	25	30
44	해외봉사단파견 (KOICA 개발협력단)	외교부	376	302
45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19	31
46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105	100
47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교육부	20	20
48	해외취업지원	노동부	104	111
49	농업인턴십 지원	농림부	4	13
50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506	491

연번	사 업 명	부처별	예산(억원)	
			'07	'08
51	우선선정직종훈련	노동부	1,575	1,196
52	산재장애인직업훈련지원	노동부	133	230
53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	여성부	5	–
54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지원	노동부	18	18
55	자활훈련	노동부	85	80
56	신규실업자직업훈련	노동부	426	439
57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노동부	861	775
58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85	83
59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	노동부	1,575	1,733
60	기업공고연계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기청	70	95
61	장애인취업지원	노동부	161 (149)	58
62	기업공고연계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기청	70	95
63	장애인취업지원	노동부	161 (149)	58
64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1,006	891
65	노인일자리 지원	복지부	763	843
66	자활취업촉진	노동부	14	14
67	장기구직자 등 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460	417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 이 자료는 2008년 2월 5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2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50% 세금감면의 혜택(감면 2免 3半減)을 부여하면서

•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음

※ 환수대상 감면세금 : 기업소득세(법인세), 수입 증치세 환급(수입부가가치세 환급액), 관세, 지방세 등

■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 중국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 사업 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세무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하여 사업 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 「중국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의 청산절차, 청산관련 세금 및 신고방법 등 세무대응요령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 중국 현지기업의 청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hot line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중국세무안내방→중국조세동향

※ 중국진출기업 청산관련 hot line 운영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397-1404

• 중국(북경)세무관: ☎ 001-86-10-8531-0843 (hwangjae-1@hanmail.net)

■ 이와 함께 중국진출 우리 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현지 공관, 대한상공회의소, 현지 상공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중국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장 회의 및 실무자급 회의(국장 및 과장급 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요약)

■ 청산 개요

• 청산이란 회사의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방법('96. 7. 9 시행)'에 의해 청산

■ 청산의 종류 및 절차

종 류	절 차
보통청산	외국투자기업이 청산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절차
특별청산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절차
파산청산	외국투자기업이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법원에서 지정하는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

■ 청산 종류별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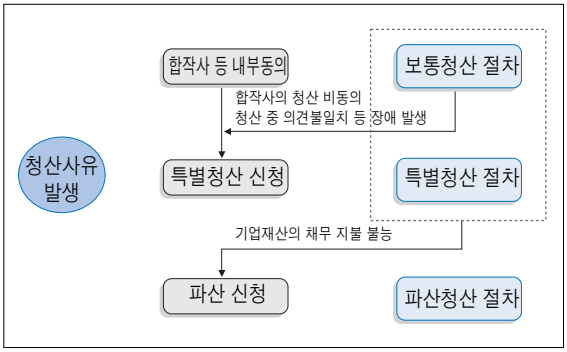

■ 청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세 목	사 유	비 고
기업 소득세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	경영활동 중 발생 세금
	청산기간 중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2免3半減(2년 100% 면세, 3년 50% 감면) 우대 세금의 반납 ⇒ 청산개시일까지 경영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감면받은 세금반납
	설비 재투자로 인한 법인세 환급분 반납 ⇒ 재투자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지방세 감면우대에 대한 반납 ⇒ 투자지역별로 별도 요건이 있음	
	청산 잔여재산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부	청산소득
수입 증치세 및 관세	감면우대사업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및 수입증치세 면세분 반납 ⇒ 수입시 환급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청산일 사업연도 현재 잔여가액에 해당하는 세금만 반납	
영업세 및 증치세	기업청산 중 청산재산매각에 따른 영업세, 증치세 납부	

■ 청산관련 세금신고 방법

- 청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기업의 청산에 참여할 수 있음
- 관할 세무서에 세금 · 체납금 · 벌금 등 완납, 세무영수증(세금계산서), 영업허가증 등 세무증서를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 말소
- 관할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말소증명서를 공상행정관리국(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인 · 허가 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말소 후 청산종료 신문 공고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 2007. 12월 말 법인세 신고시 -

* 이 자료는 2008년 1월 22일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표한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기업결산 시점부터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야

■ 국세청은 2007년 12월 말 법인세 신고안내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고, 세무조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기업의 법인세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업결산으로 확정)에 대해 세무조정(익금 또는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확정

고의적 세금탈루,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 초래

• 징벌적 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법인세, 부가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징

• 따라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누락시 가산세 포함 최고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탈루혐의가 큰 7,729개 법인 집중 관리

■ 탈루혐의가 큰 법인 심층 분석, 신고 안내

•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30개 분야, 880개 법인)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것임

• 아울러,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29개 업종, 3,203개 법인)

– 개인유사법인, 1인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2,738개)

– 기타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908개)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불성실신고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

•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분석하여 신고안내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주요 탈루 사례

①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 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

위로 계상

②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절하여 부당지원

③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④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 탈루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관리 강화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 명단을 수시로 수집하여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음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

- 앞으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특히, 영세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으나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득조절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람

추징세액 계산 사례

■ 사례1 :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나 다음 해 세무조사시 적발
⇒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 933백만원 추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본 세	가 산 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계	933	735	160	38
법인세	377	250	100	27
		10억×25% (법인세율)	2.5억×40% (가산세율)	2.5억×10.95% (가산세율)
부 가 가치세	171	100	60	11
		10억×10% (부가세율)	신 고: 1억×40% (가산세율) 미교부:10억×2% (가산세율)	1억×10.95% (가산세율)
종 합 소득세	385	385	–	–
		11억×35% (소득세율)		

■ 사례2 : 매입세금계산서 10억원을 가공으로 수취하고 원가 과다계상하였으나 5년 후 세무조사시 적발
⇒ 가공원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등 1,076백만원 추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본 세	가 산 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계	1,076	735	150	191
법인세	487	250	100	137
		10억×25% (법인세율)	2.5억×40% (가산세율)	2.5억×54.75% (가산세율)
부 가 가치세	204	100	50	54
		10억×10% (부가세율)	신고: 1억×40% (가산세율) 불성실:10억×1% (가산세율)	1억×54.75% (가산세율)
종 합 소득세	385	385	–	–
		11억×35% (소득세율)		

재정통계

■ 조세체계의 변천
■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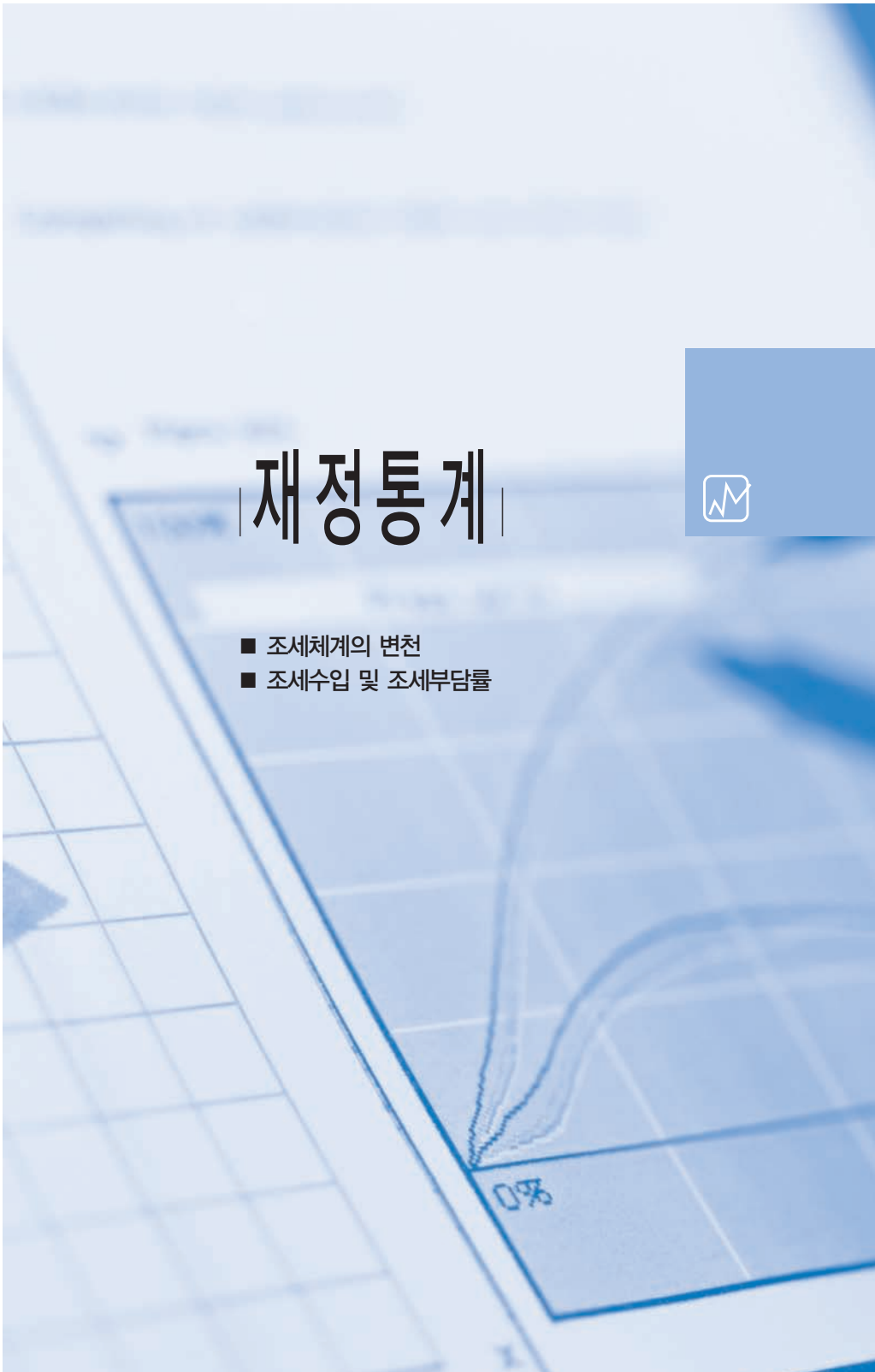

1. 조세체계의 변천

(1) 국 세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일반소득세					49.7.15 소득세로 새로이 공포									
소득세					49.7.15									
법인세					49.11.7									
특별법인세		46.12												
임시토지수득세							51.9.25							
토지세														
지세							51. 9. 25 임시토지수득세로 시행정지							
광세														
임시외환특별세														58.8.28
상속세														
증여세						50.4.8								
자동차세														
자산재평가세														58.1.2
부동산투기억제세														
임시특별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취인소특별세		46.1												
자본이자세				48.4										
사업세					49.8.13 영업세로 통합									
임시이득세		46.12												
외화채특별세				48.4										
이익배당세					49.10									
공사채이자세				48.4										
법인자본세					49.10									
등록세														
조선은행권발행세						50.4								
인지세														
취인세		46.1												
특별입장세				48.5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60.12.30 토지세로 통합														
		60.12.30	62.1.1 지방세로 이양												
			62.1.1 지방세로 이양												
		61.1.1													
59.1.1			62.1.1 지방세로 이양												
									68.1.1						
				63.12.16	64.6.12										
														73.1.14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 국 세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일반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법인세															
임시토지수득세															
토지세															
지세															
광세															
임시외환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투기억제세	75.1.1 소득세로 통합														
임시특별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취인소특별세															
자본이자세															
사업세															
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익배당세															
공사채이자세															
법인자본세															
등록세			77.11 지방세로 이양												
조선은행권발행세															
인지세															
취인세															
특별입장세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0.12.31							
																07. 7. 19 폐지	
90.1.1								98.12.28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 국 세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마권세														
광고세		46.8												
건축세		46.8												
면허세						50.3.10				54.3.31 지방세로 이양				
증권거래세														
주세			47.11 음료세로 통합		1949.10.21에 분리									
청량음료세			47.11 음료세로 통합		1949.10.21에 분리		1950.12.1							
음료세			47.11에 주세,청량음료세를 통합			49.10.21								
골패세						50.12.1 물품세로 통합								
물품세														
직물세										54.3.31 물품세로 통합				
직물류세														
사탕소비세		46.8												
입장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특별행위세					49.10									
영업세					49.8.13									
석유류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58.8.28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49.12. 관세법 제정									
종합부동산세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62.1.1 지방세로 이양												
				63.1.1									72.1.1		
											70.1.1				
			62.1.1 지방세로 이양												
			62.1.1												
									68.1.1 시행과 동시에 폐지						74.1.1
			62.1.1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 국 세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마권세															
광고세															
건축세															
면허세															
증권거래세				78.12.5											
주세															
청량음료세															
음료세															
골패세															
물품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직물세															
직물류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사탕소비세															
입장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통행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유흥음식세			77.1.1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전기가스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특별행위세															
영업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석유류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전화세															
부가가치세				77.7.1											
특별소비세				77.7.1											
교육세															
방위세	75.7.16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1.09.01						
90.12.31											2001.1월 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						
90.12.31																	
				94.1.1									07.1.1.부터 교통세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명칭변경				
				94.7.1													
														05. 1. 1 신설			

자료: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1996.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2) 지방세(도세)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51.6.2							
	사업세부가세					49.12.12									
	취인소득세부가세		46.10												
	영업세부가세					49.12.12		51.6.2			54.4.14 부활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														58.12.29
	광세부가세														
독립세 (보통세)[1]	임야세														
	제1종소득세				48.7										
	특별소득세				48.7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														
	도축세														
	도장세				48.7 도축세와 통합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52.9.28 취득세로 개명						
	취득세								52.9.28						
	면허세										54.4.14 국세에서 이양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레저세														
	주민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면세지특별지세													57.2.12	
	입정세							51.6.2							
	특별사업세					49.12.12									
	특별행위세							51.6.2							
	수렵세							51.6.2						57.2.12	
	동력세							51.6.2							
	선박세							51.6.2	52.9.28 선세로 개명						
	선세								52.9.28						
	금고세								52.9.28 시, 읍, 면세에서 이양					57.2.12	
	접객인세								52.9.28 시, 읍, 면세에서 이양					57.2.12	
	광고세								52.9.28					57.2.12	
	전화세								52.9.28					57.2.12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66.8.3								
		61.12.2					66.8.3								
		61.12.2					66.8.3								
		61.12.8 자동차세로 통합													
		61.12.8													
		61.12.8													
		61.12.8													
		61.12.8 재산세로 통합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61.12.8 자동차세로 통합													
		61.12.2 국세에서 이양													
		61.12.2 국세에서 이양													
		61.12.2 국세에서 이양													
														73.3.12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61.12.8													
		61.12.8 재산세로 통합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2) 지방세(도세)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보통세)[1]	임야세															
	제1종소득세															
	특별소득세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															
	도축세		76.12.31 시군세로 이양													
	도장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76.12.31 시군세로 이양													
	유흥음식세		76.12.31 국세로 이양													
	마권세		76.12.31 시군세로 이양												88.12.26 시군세	
	레저세															
	주민세		76.12.31 시군세로 이양													
	등록세		76.12.31 국세에서 이양													
	담배판매세															
	면세지특별지세															
	입정세															
	특별사업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															
	선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에서 이양							2001년 레저세로 명칭변경										
											2001년 마권세에서 레저세로 명칭변경							
	91.12.14 시군세에서 이양																
	91.12.14																
											2001.1월 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							

주: 1) 1991. 12. 14부터 독립세를 보통세라 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 『한국세제사』;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3) 지방세(시 · 군세)[1]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4]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51.6.2							
	사업세부가세					49.12.12									
	영업세부가세					49.12.12		51.6.2			54.4.14 부활				
	광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2]		46.10.15												
	자동차세부가세														58.12.29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52.9.28 취득세부가세로 개명						
	특별사업세부가세					49.12.12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2]													57.2.12	
	제1종소득세부가세				48.7										
	특별소득세부가세				48.7										
	차량세부가세				48.7 차량세의 신설로 폐지			51.6.2 부활							
	임야세부가세							51.6.2							
	도축세부가세							51.6.2							
	어업세부가세							51.6.2							
	동력세부가세							51.6.2							
	취득세부가세								52.9.28						
	면허세부가세										54.4.14				
	특별행위세부가세								52.9.28						
	수렵세부가세								52.9.28					57.2.12	
	선세부가세								52.9.28						
	금고세부가세								52.9.28					57.2.12	
	접객인세부가세								52.9.28					57.2.12	
	광고세부가세								52.9.28					57.2.12	
	전화세부가세								52.9.28					57.2.12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주민세부가세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66.8.3								
		61.12.8													
		61.12.8 자동차세(도세부가세)로 통합													
		61.12.2					66.8.3								
		61.12.2					66.8.3								
		61.12.8													
		61.12.8 재산세로 통합													
		61.12.8 자동차세(부가세)로 통합													
		61.12.8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61.12.8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61.12.8 재산세로 통합													
		61.12.2 국세에서 이양													
		61.12.2 국세에서 이양													
														73.3.12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3) 지방세(시 · 군세)[1]

		1975	1976[5]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2]															
	자동차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특별사업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2]															
	제1종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76.12.31 도세인 도축세의 시 · 군세 이양으로 폐지													
	어업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76.12.31													
	면허세부가세		76.12.31													
	특별행위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선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76.12.31 도세인 자동차세의 시 · 군세 이양으로 폐지													
	유흥음식세부가세		76.12.31 국세로 이양													
	주민세부가세		76.12.31 도세인 주민세의 시 · 군세 이양으로 폐지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3) 지방세(시 · 군세)[1]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4]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독립세	유흥세[2]		46.10.15												
	잡종세[3]		46.10.15 축견세와 선세만을 남기고 폐지												
	교통세(서울, 부산)[2]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2]					49.12.12									
	부 · 읍 · 면세(특별호세)					49.12.12									
	축견세		46.10.15 잡종세					51.6.2							
	선세		46.10.15 잡종세						52.9.28 도세로 이양						
	차량세				48.7				52.9.28 도세로 이양						
	특별영업세					49.12.12		51.6.2							
	금고세							51.6.2	52.9.28 도세로 이양						
	접객인세							51.6.2	52.9.28 도세로 이양						
	벌목세										54.4.14			57.2.12	
	재산세														
	농지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마권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61.12.8 국세로 이양													
		61.12.8													
		61.12.2 국세에서 이양													
		61.12.8													
		61.12.8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3) 지방세(시 · 군세)[1]

		1975	1976[5]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독립세	유흥세[2]															
	잡종세[3]															
	교통세(서울, 부산)[2]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2]															
	부 · 읍 · 면세(특별호세)															
	축견세															
	선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금고세															
	접객인세															
	벌목세															
	재산세															
	농지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주민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자동차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주행세															
	마권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88.12.26 도세로	
	토지과다보유세												86.12.31			89.6.16 종
	종합토지세															89.6.16
	담배소비세														88.12.26	
	담배판매세										84.12.24				88.12.26 담배소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76.12.31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0.12.31폐지								
											01.1.1 농업소득세 신설(농지세와 내용 동일)							
										00.1.1							
이양																	
합토지세의 신설로 폐지																	
															05.1.1 폐지		
비세의 신설로 폐지																	
	91.12.14 도세로 이양																

주: 1) 해방 당시의 지방세는 도세, 부세, 읍 · 면세의 체계로 구성(부 · 읍 · 면세가 지금의 시 · 군세에 해당). 부세 17개, 읍 · 면세 12개 세목임.
2) 부세에만 존재.
3) 해방 당시의 잡종세에는 배우세, 당구대세, 피아노세 등의 11개 세목이 있었으나, 1946. 10. 15의 개정으로 9개 세목이 폐지되고 축견세와 선세만이 남음.
4) 도세의 모든 세목에 부가세를 신설.
5) 시 · 군의 부가세제도를 폐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 『한국세제사』.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1. 조세체계의 변천 〈계속〉

(4) 지방세(특별시,광역시세, 구세)

가. 특별시,광역시세[1]

		1945~87	1988[2]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통세	취득세		88.4.6																			
	등록세		88.4.6																			
	주민세		88.4.6																			
	자동차세		88.4.6																			
	주행세														00.1.1							
	농지세		88.4.6											00.12.31 폐지								
	농업소득세															01.1.1 농업소득세 신설(농지세와 내용 동일)						
	도축세		88.4.6																			
	마권세		88.4.6	88.12.26 도세로 이양																		
	레저세															01.1.1						
	담배소비세		88.12.26																			
목적세	공동시설세		88.4.6																			
	도시계획세		88.4.6																			
	지역개발세					91.12.14																
	지방교육세															01.1.1						

나. 구세

		1945~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통세	취득세		88.4.6																			
	등록세		88.4.6																			
	주민세		88.4.6	89.6.16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폐지																		
	자동차세			89.6.16																05.1.1 폐지		
목적세	지방교육세		88.4.6																			

주: 1) 1995. 1. 1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

2) 1988. 4. 6 이전의 경우 특별시,직할시세는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8. 4. 6에 구가 자치구로 됨에 따라 이전의 특별시,직할시세 중 면허세, 재산세, 토지초과보유세, 사업소세가 구로 이전됨.

자료: 행정자치부,『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한국세제사』.

재정경제부,『조세개요』, 각 연도.

2.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억원,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조세 계	금액	3,981	4,929	5,229	6,526	10,217	15,498	23,133	29,593	40,955	53,607	65,754	81,7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계	금액	3,347	4,077	4,334	5,215	8,447	12,555	19,147	24,027	33,723	44,017	52,977	65,779
	구성비	84.1	82.7	82.9	79.9	82.7	81.0	82.8	81.2	82.3	82.1	80.6	80.5
내국세	금액	2,838	3,555	3,743	4,391	7,180	10,123	13,705	16,752	22,525	30,375	36,758	45,958
	구성비	71.3	72.1	71.6	67.3	70.3	65.3	59.2	56.6	55.0	56.7	55.9	56.2
교통세	금액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관세	금액	509	522	591	824	1,267	1,810	2,755	3,859	6,464	7,323	7,661	8,906
	구성비	12.8	10.6	11.3	12.6	12.4	11.7	11.9	13.0	15.8	13.7	11.7	10.9
방위세	금액	-	-	-	-	-	622	2,687	3,416	4,733	6,319	8,558	10915.4
	구성비	-	-	-	-	-	4.0	12	12	12	12	13	13.4
교육세	금액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	금액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전매익금	금액	301	454	429	570	690	1,355	1,780	2,200	2,800	3,600	5,100	6,800
	구성비	7.6	9.2	8.2	8.7	6.8	8.7	7.7	7.4	6.8	6.7	7.8	8.3
지방세	금액	332	398	466	741	1,080	1,588	2,206	3,366	4,433	5,990	7,677	9,144
	구성비	8.3	8.1	8.9	11.4	10.6	10.2	9.5	11.4	10.8	11.2	11.7	11.2
경상GDP(억원)[2]	금액	27,639	34,199	42,179	54,536	77,777	103,861	143,045	183,564	247,447	317,319	387,749	486,727
총조세부담률		14.4	14.4	12.4	12.0	13.1	14.9	16.2	16.1	16.6	16.9	17.0	16.8
국세부담률[1]		13.2	13.2	11.3	10.6	11.7	13.4	14.6	14.3	14.8	15.0	15.0	14.9
지방세부담률		1.2	1.2	1.1	1.4	1.4	1.5	1.5	1.8	1.8	1.9	2.0	1.9

2.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계속〉

(단위: 억원, %)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조세 계	금액	95,156	114,479	124,082	135,314	154,160	185,361	225,842	261,949	332,148	383,550	446,805	502,86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계	금액	76,364	92,207	100,537	110,474	126,223	154,394	185,371	212,326	268,474	303,198	352,184	392,606
	구성비	80.3	80.5	81.0	81.6	81.9	83.3	82.1	81.1	80.8	79.1	78.8	78.1
내국세	금액	52,507	61,884	66,974	74,969	84,640	100,120	125,402	152,084	191,302	240,892	300,801	341,746
	구성비	55.2	54.1	54.0	55.4	54.9	54.0	55.5	58.1	57.6	62.8	67.3	68.0
교통세	금액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관세	금액	10,126	14,632	15,940	15,661	19,426	26,965	25,736	21,176	27,654	34,355	31,532	28,859
	구성비	10.6	12.8	12.8	11.6	12.6	14.5	11.4	8.1	8.3	9.0	7.1	5.7
방위세	금액	11,753	13,060	14,776	16,632	18,434	23,196	29,111	34,832	44,306	12,630	1,629	1,213
	구성비	12.4	11.4	11.9	12.3	12	13	13	13	13	3.3	0.4	0.2
교육세	금액	1,979	2,631	2,848	3,211	3,724	4,113	5,123	4,234	5,213	15,321	18,223	20,789
	구성비	2.1	2.3	2.3	2.4	2	2	2	2	2	4.0	4.1	4.1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종합부동산세	금액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전매익금	금액	7,600	8,300	8,460	8,290	9,840	9,043	9,470	15.0	-	-	-	-
	구성비	8.0	7.3	6.8	6.1	6.4	4.9	4.2	0.0	-	-	-	-
지방세	금액	11,192	13,972	15,085	16,549	18,097	21,924	31,000	49,608	63,674	80,352	94,621	110,261
	구성비	11.8	12.2	12.2	12.2	11.7	11.8	13.7	18.9	19.2	20.9	21.2	21.9
경상GDP(억원)[2]	금액	557,217	655,590	751,263	840,610	981,102	1,151,643	1,371,115	1,547,534	1,866,909	2,260,076	2,575,254	2,906,756
총조세부담률		17.1	17.5	16.5	16.1	15.7	16.1	16.5	16.9	17.8	17	17.3	17.3
국세부담률[1]		15.1	15.3	14.5	14.1	13.9	14.2	14.2	13.7	14.4	13.4	13.7	13.5
지방세부담률		2.0	2.1	2.0	2.0	1.8	1.9	2.3	3.2	3.4	3.6	3.7	3.8

2.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계속〉

(단위: 억원,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세 계	금액	604,928	720,905	823,549	885,604	844,744	942,442	1,135,353	1,224,577	1,354,935	1,477,969	1,519,974	1,634,431	1,758,526[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계	금액	472,617	567,745	649,602	699,278	677,977	756,580	929,347	957,928	1,039,678	1,146,640	1,177,957	1,274,657	1,380,443
	구성비	78.1	78.8	78.9	79.0	80.3	80.3	81.9	78	77	78	77	78	79
내국세	금액	384,490	443,820	492,023	521,531	512,378	563,931	711,061	740,273	822,277	922,311	952,764	1,044,279	1,138,795
	구성비	63.6	61.6	59.7	58.9	60.7	59.8	62.6	60	61	62	63	64	65
교통세	금액	24,572	33,718	48,240	55,471	65,040	72,557	84,036	105,349	94,775	100,005	100,651	102,878	95,938
	구성비	4.1	4.7	5.9	6.3	7.7	7.7	7.4	9	7	7	7	6	5
관세	금액	34,489	46,332	53,095	57,976	38,360	46,873	57,997	59,234	66,013	68,473	67,965	63,177	68,584
	구성비	5.7	6.4	6.4	6.5	4.5	5	5.1	5	5	5	4	4	4
방위세	금액	767	631	143	-85	14	16	-29	-9	8	21	571	-86	8
	구성비	0.1	0.1	0	0	0	0	0	0	0	0	0	0	0
교육세	금액	25,396	29,931	41,242	53,985	52,031	52,969	57,983	37,825	35,316	36,513	35,295	35,266	34,245[3]
	구성비	4.2	4	5	6.1	6.2	5.6	5.1	3	3	2	2	2	2
농어촌특별세	금액	2,904	13,313	14,860	10,398	10,154	20,234	18,299	15,256	21,289	19,317	20,711	24,730	29,597
	구성비	0.5	2	1.8	1.2	1.2	2.1	1.6	1	2	1	1	2	2
종합부동산세	금액	-	-	-	-	-	-	-	-	-	0	0	4,413	13,275
	구성비	-	-	-	-	-	-	-	-	-	0	0	0	1
전매익금	금액	-	-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	-
지방세	금액	132,311	153,160	173,947	186,326	166,767	185,862	206,006	266,649	315,257	331,329	342,017	359,774	378,083
	구성비	21.9	21.2	21.1	21	19.7	19.7	18.1	22	23	22	23	22	22
경상GDP(억원)[2]	금액	3,402,083	3,988,377	4,485,964	4,911,348	4,841,028	5,294,997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93,805	8,105,159	8,478,764
총조세부담률		17.8	18.1	18.4	18	17.4	17.8	19.6	19.7	19.8	20.4	19.5	20.2	20.7
국세부담률[1]		13.9	14.2	14.5	14.2	14	14.3	16.1	15.4	15.2	15.8	15.1	15.7	16.3
지방세부담률		3.9	3.8	3.9	3.8	3.4	3.5	3.6	4.3	4.6	4.6	4.4	4.4	4.5

주: 1) 1989년까지는 전매익금을 포함한 부담률임.
2) 경상GDP는 2000년 기준임.
3) 지방세 및 조세계는 '06년 전망치로 지방세 비율 21.5%를 참조한 값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인수위 "5년간 단계적 감세로 투자 · 경기 활성화 유도"
효과 검증없이 대기업만 혜택 · 세수 감소 대책도 없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감세정책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지난 5일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또 법인세율 차별화 구간(현재 세전이익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는 25%)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감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감세정책은,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낮춰주면 기업 투자를 이끌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감세정책을 추진해 경기활성화를 이끈 점이 주로 참조됐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법인세 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율이 낮으면 기업들이 낼 세금이 줄어들어 여유자금 등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반론의 핵심이다. 윤종훈 회계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는 "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 정도로 법인세를 줄이고 그에 따른 재정 규모를 축소할 때 총생산 증가효과는 0.03%에 그쳐, 법인세 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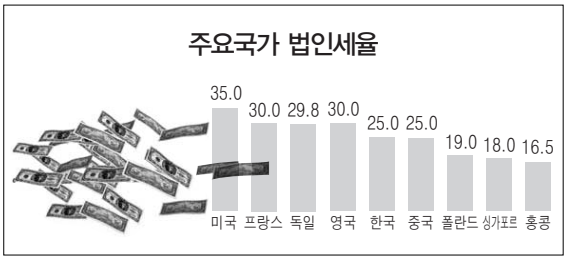

법인세 인하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이익배당 욕구가 강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특히 지금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현금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도 크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자체 추산으로도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내릴 경우 세수 감소액이 연간 6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기업투자 증가와 경기활성화로 세수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27%→25%) 내려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핵 위기가 불거지고, 주가지수가 500선을 위협받자 한나

라당과 전경련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만 줬다.

인수위 경제분과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년 뒤에 나타난다"며 "지난해에도 법인세는 2006년보다 20.6%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회계사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법인세가 증가한 것을 감세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 고령화로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세원 확보 대책 없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오히려 새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11일 한겨레〉

비과세 등 세금 감면 연간 21조원에 달해

비과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연간 21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기획예산처가 한국조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지출 해외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조세지출은 205개 항목에 20조 8,999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156조 5,177억원)의 13.4%에 달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지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면 박사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외국에 비해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세지출이 복잡하고 많으면 조세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지출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이 56개 항목 5조 5,176억원으로 관련 예산(3조 3,734억원)의 163.4%에 달했다. 보건분야 조세지출은 1조 869억원으로 직접지출 예산(3조 5,723억원)의 30.4%였다.

〈2008년 2월 11일 한국일보〉

'누더기 조세감면' 언제 수술할 건가

특정 부문에서 비과세 ·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깎아준 규모가 해당 부문의 예산 지출액보다도 많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 · 중소기업 부문의 경우 2006년 중 무려 56가지 · 5조 5,000억원의 조세지출이 이뤄져 이 분야에 직접 지출된 예산의 1.6배나 됐다. 이 외에도 비과세 · 저율 과세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소득 공제 등을 통해 이뤄지는 조세지출이 예산지출의 30%를 넘는 부문이 농림 · 해양수산(60%) 등 여럿이었다. 비과세 · 감면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얘기다.

한번 만들어진 비과세 · 감면 제도는 기득권이 돼서 항구화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시한이 정해져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도도 있지만 예정대로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의기투합, 행정편의 등이 얽혀 시한이 거듭 연장되기 때문이다. 2006년에 시한이 돌아온 55개 제도 가운데 15개, 지난해에는 22개 가운데 10개만 폐지됐다. 그나마 폐지된 제도의 수는 여럿이지만 액수 기준으로는 미미하다. 이렇듯 한번 만들어진 조세감면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 제도는 누더기가 돼 방만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가짓수가 2006년 기준 226개에 이를 정도다.

지난 한해 동안 깎아준 세금은 22조 7,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약 13%였다. 비과세 · 감면의 절대액이 나라 예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가짓수가 너무 많고 항구화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제대로 된

정책효과 분석도 없이 비과세 · 감면을 계속한 결과 조세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져 자원배분의 왜곡은 물론 재정건전성에도 큰 짐이 되고 있다. '감세'를 경제정책의 큰 줄기로 내세운 이명박정부는 특정 세목의 세율인하 검토 수준이 아니라 조세감면 제도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2008년 2월 11일 경향신문〉

인수위, 감세로드맵 마련…6월 법인세 1단계 인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행 13~25%인 법인세율이 11~22%로 낮아진다. 이어 2011년부터는 2단계로 법인세율이 10~20% 수준까지 인하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추진' 로드맵을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확인된 인수위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감세 패키지는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등을 망라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속세를 제외한 감세공약 대부분이 실행되는 셈이다. 예상되는 감세 규모는 총 10조 7,900억원에 달한다.

인수위 방안으로 줄어들 기업 세금은

■ 법인세 인하	7조 9,000억원
■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7,500억원
■ 최저한세율 인하	1,250억원
■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0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2조원
기대되는 총감세효과	10조7,950억원

자료: 인수위

우선 인수위는 법인세율 인하를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단계로 오는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때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현행 13%에서 11%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만약 오는 6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1조 5,900억원 규모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3조 1,800억원 규모 법인세가 덜 걷히게 된다. 9월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2009년 1조 5,900억원, 2010년 3조 1,800억원 등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2단계 법인세율 인하 시기는 2011년으로 잡혔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22%와 11% 적용되는 세율이 20%와 10%로 또다시 하향 조정된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때 바꾸기로 했다. 현재 13%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범위를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해 7,500억원 규모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2008년 1월 투자분부터 투자금액 대비 7%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차별 면제, 공제 확대는 지난해 상속세제 개편 과정을 봐가면서 검토 ·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감세 로드맵이 달성되면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액/과세표준)이 지금보다 6.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내리면 국내 투자 11조 2,000억원, 고용 20만명, 외국인 투자 1조 8,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을 0.8%포인트 높이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용어〉 최저한세율 : 비과세 등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2008년 2월 1일 매일경제〉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방안' 부문별 내용

한국재정학회가 29일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소득세(전영준 한양대 · 이철인 성균관대 교수)**

우리나라 소득세는 4단계 구조로 세율이 8~35%이다. 외국에 비해 세율구조가 단순하고 세율은 낮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의 감세조치를 감안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율 구조를 3단계로 개편하고 최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

물가상승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연동해 과표구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자와 배당 등 자본소득세는 개방에 따른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감안, 인하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자를 확대하되 증시에서의 자금흐름을 고려해 다른 금융소득보다는 실효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연금소득 공제는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세제 단순화와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비과세 · 감면제를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과 자본축적을 위한 장기저축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세액공제는 제한돼야 한다.

◆ **법인세(이인실 서강대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OECD 평균 법인 세율도 2000년 33.6%에서 2006년 28.4%로 5.2%포인트 낮춰졌다. 반면 우리는 28%에서 25%로 3%포인트 인하됐다.

특히 명목 법인세율은 내렸지만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은 늘었다. 국내 영업이익 대비 평균 유효법인세율은 19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증가했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쟁 상대국인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보다는 10~15%포인트 높다.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면 세수가 1조원 감소하겠지만 GDP가 0.1~0.2%포인트 늘고 취업자도 10만명가량 는다.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실시하면 세수에 부정적이지 않다.

◆ **부동산세제(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최병호 부산대 교수)**

우리나라의 총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OECD 평균인 5.6%보다 훨씬 높다.

또한 전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는 35.3%인데 우리나라는 51.5%에 이른다. 부동산 관련 재산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과표현실화 등으로 세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을 위협한다. 종부세의 급격한 완화나 폐지는 지방재정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기적으로 3%(주택)와 4%(토지)인 최고세율을 낮추고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감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게 유효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은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경우 전액 또는 일정 한도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일정 기간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소득공제, 세율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취득 · 등록세는 추가인하하면서 일원화해, 동일 행위에 대한 중복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

◆ **소비 · 지방세제(김성순 단국대 ·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부가가치세는 현행 10%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 대신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과표를 양성화하고 면세율이나 영세율 적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면세품목을 없애면 세수는 13조 6,000억원 늘어 부가세의 38%, 국세의 10% 정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술과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의료비 증가로 사회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므로 세율의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석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는 특소세로 통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 교육세 등의 목적세는 폐지해야 한다. 세금에 추가되는 부가세(surtax)도 없애야 한다.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세인 레저세 중 마권구입 · 카지노 등 사행 행위와 관련된 세목은 국세로 전환하고 주세 역시 지자체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 **에너지 · 환경세제(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대비, 탄소세를 부과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산업 ·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문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 세제를 환경세로 통합하고 친환경 자동차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줘야 한다.

교통세와 기타 유류소비세는 종량세이지만 소비억제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물가에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승용차에 한정된 특별소비세도 비승용차로 과세대상을 넓히고 비과세나 저율로 과세하는 석탄이나 중유, LNG에는 정상과세해야 한다. 다만 서민용 연료(등유 · LPG프로판)에는 세금을 줄이고 화물 · 운수업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의 일률적 인하는 세수 감소와 에너지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20%인 탄력세율 적용을 30%까지 높여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추가인하할 여지가 있다.

〈2008년 1월 29일 서울신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기업 투자유인 효과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키로 했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투자유인 효과에 회의적이란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왔다는 점에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를 유발하는 '친재벌 감세정책'이라는 비판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설비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해 회의적이란 내용의 논문들이 다수 발표됐다.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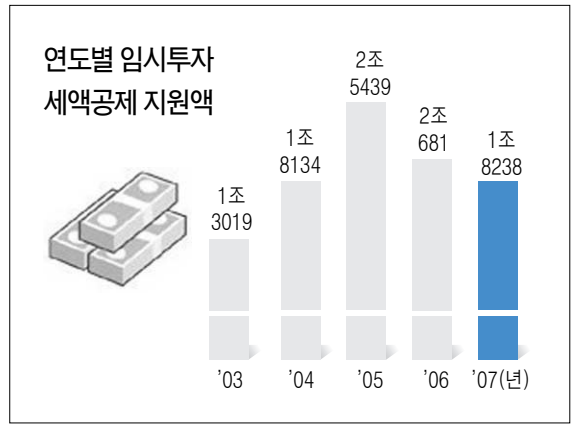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세액공제 효과 입증 어려워=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4년 내놓은 논문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경기가 나쁠 때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대표적인 경기조절 지원세제로 알려져 있으나 설비투자 증대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적인 투자(임세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없을 때)에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유찬 계명대 교수도 2004년 논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 분석'에서 "임시투

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2006년 내놓은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보고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절이 목적이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한시적으로 운용돼야 하지만 경기와 상관없이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돼 왔다"며 "미국도 이 제도를 1986년에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친재벌 감세정책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임시'란 말이 붙은 것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할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03년 3.1%의 성장률로 경기침체 국면에 빠졌을 때는 물론 2002년 7.0% 성장률로 경기과열이 우려될 때도 시행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반면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 손실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지난 5년간 모두 9조 5,511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입증되지도 않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연 2조원 가량의 세수를 낭비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세금감면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5년간 깎아준 세금의 80% 가량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제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납세액이 많을 뿐 아니라 투자규모가 큰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세율과 투자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며 "수혜 대상기업의 97.5%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등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 투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08년 1월 26일 경향신문〉

관료 · 정치인 출신 오면 효율 '뚝'

관료나 정치인 출신 인사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됐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많은 반면 자체 수입은 낮아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민희철 전문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7개 공기업과 76명의 CEO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분석을 위해 민 연구위원은 이들 CEO의 이전 경력에 따라 각각 ▲정치인 ▲관료(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 출신,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승진자 ▲기타 등으로 분류한 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2001~2005년간의 수입지출 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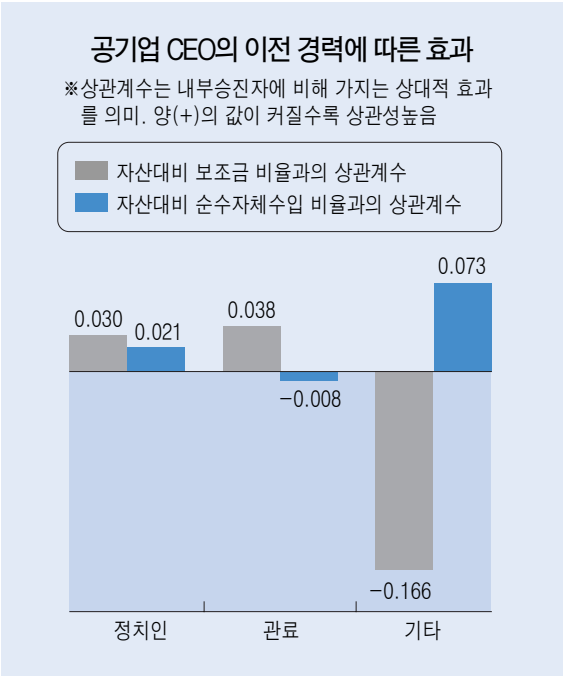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분석 결과 우선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관

료나 정치인 출신 CEO가 운영할 때 더 컸다. 관료 출신 CEO가 운영할 경우 '자산대비 보조금 비율'은 내부승진자 CEO가 운영할 때에 비해 약 3.8% 정도 높았고, 정치인 출신의 경우도 3% 정도 높았다.

특히 관료를 세분화한 결과, 주무부처 출신 CEO의 경우 내부승진자가 경영할 때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액수가 4.2% 정도 높았고, 정치인 출신(2.2%)이 경영할 때보다도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체수입 규모는 관료 · 정치인 · 내부승진자 CEO가 운영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았다. '자산대비 순수자체수입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타 CEO의 경우 내부승진자의 경우에 비해 약 7.3% 높았고, 나머지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의 경우에는 음(-)의 값이 나타나 내부승진자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연구위원은 "보조금의 규모가 정부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측정하는 변수였다면, 자체수입의 규모는 공기업이 시장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연결된 CEO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조금은 많고 자체 수입은 낮아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1~2005년 동안 공기업 CEO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치인 출신의 비중(43.3%→22.2%)이 줄어든 반면, 전직 관료(45.6%→66.0%)의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 25일 문화일보〉

"대규모 법인 · 고소득층 세무조사 비율 더 높여야"

최근 국세청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하는 등 친기업적인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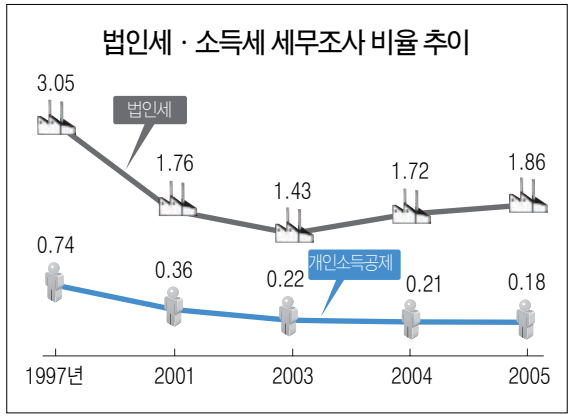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3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세무조사 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과 한국 등 3개국의 법인세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 비율(납세대상 중 세무조사 건수 비율 · 실제조사 기준)은 일본이 4.25%로 가장 높고, 한국(1.86%), 미국(1.05%) 순이었다.

특히 미국의 법인세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10.93%인 반면 미국의 총자산 1,000만달러 이상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2%나 됐다.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1.38%로 미국(0.79%)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징수를 위한 세무조사 비율은 1997년 3.05%에서 2003년 1.43%로 떨어졌으며, 2004년 1.72%, 2005년 1.86%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3개 세목의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모두 26조 9,185억원으로 연평균 2조 9,90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3대 세목 중 부가가치세 부과세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비중은 7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조세연구원은 "소규모 법인보다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산층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탈루율이 중산층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연구원은 또 "획일적인 현장 세무조사보다는 전산검증,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 세무서 대면조사 등과 같은 간편한 방식의 조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 국세청 직원 가운데 조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0.6%에서 2006년에는 22.4%로 작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가량의 국가들이 국세청 인력의 30% 이상을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 24일 경향신문〉

각국 세율 낮춰 기업 끌어들이기 무한경쟁

지난해 10월 홍콩은 올해 회계연도(4월)부터 법인세율을 16.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가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2%포인트 낮춘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도널드 창 홍콩 행정장관은 "경제여건이 허락한다면 5년 임기 중 1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세계 각국은 조세주권주의를 포기했다. 국가 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체제가 더욱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세계 각국이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핵심 정책수단인 조세를 경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각국이 강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 못지않게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 개인세 폐지 도미노

호주 캐나다	상속세 · 증여세 폐지
뉴질랜드	상속세 폐지
프랑스	소득 · 재산세 상한선 인하
스웨덴	부유세 폐지

◆ **택스커플링 시대**

조세경쟁주의는 조세동조화(Tax Coupling)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동조화란 한 나라가 세금을 줄이면 인근 국가나 경쟁국가도 덩달아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각국 정부는 최고 세율을 낮춰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올해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최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뉴질랜드도 상속세는 이미 폐지했다. 증여세도 아예 폐지하거나 상속세보다 세율을 낮추고 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고령화가 진척되면서 생전에 증여를 통해 경제활동을 부추기자는 취지에서다. 영국의 상속세율은 40%지만 증여세율은 20%다.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선진국들은 노령화에 따라 생전 소비가 줄고,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증여세 세율을 낮춰 생전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나라 부유층들의 부의 이전도 촉진하고 있다. 원 연구원은 "높은 세율 때문에 빠져나가는 자금을 자국 내에 묶어두는 한편 다른 나라 갑부들의 돈도 끌어들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유세(Wealth tax)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부유세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과세해왔다. 최근 스페인과 스웨덴이 강력하게 부유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앞서 2000년 이후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부유세 부과를 중단했다. 이제 유럽에서 부유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위스 정도뿐이다. 부유세 폐지 움직임은 부유층의 돈을 묶어둬 자국 경제로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외국 부유층의 재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중적인 포석이기도 하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돈과 사람의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조세주권주의가 희미해지고 있다"며 "조세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간 조세 체계가 닮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붙은 세금 인하 경쟁

조세경쟁시대를 연 주역은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981년 법인세율 47%를 10%로 대폭 낮췄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서유럽의 최후진국에서 고속성장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아일랜드의 애초 외국기업 유치 목표는 1,000개였다. 그러나 이를 훨씬 초과한 1,2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소득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라선 기간이 9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S라인 성장곡선을 그린 셈이다. 그 이면에는 바로 세금 인하가 자리잡고 있었다. 룩셈부르크도 세제 개혁을 통해 유럽 금융센터로 탈바꿈한 사례다. 과거 룩셈부르크의 주력 산업은 철강업이었다. 그러나 철강산업이 퇴조를 보이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과감한 세금 인하 조치를 취했다. 주식이나 채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과세를 폐지했다. 유럽연합의 평균 자본이득세율 18.6%에 비하면 획기적인 조치다. 부유세를 유지하는 프랑스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맨 먼저 단행한 조치가 바로 세제였다. 과거 복지병을 치유하고 더 일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인들의 4대 직접세 세금 상한선을 당해연도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췄다. 그만큼 일을 더해서 더 번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시도다. 4대 직접세는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부유세다.

◆ 투자 늘면 세수도 증가

최경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은 직접세를 낮춰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당장 부족한 재정은 소비세로 채워나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세 신설도 세수감소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영향권에 본격 접어들 것"이라며 "직접세는 줄이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간접세를 늘리면 감소한 세수를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22일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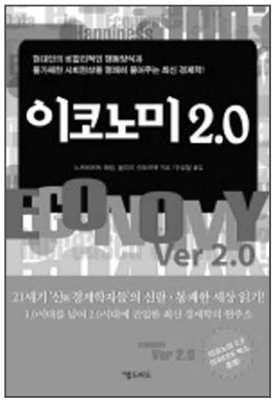

이코노미2.0

엘도라도 발행

노르베르트 해링 · 올라프 슈토르벡 지음

안성철 옮김

21세기 '신(新)경제학자들'의 최신 경제학 이야기

독일의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의 매주 월요일에 기고되었던 칼럼 '알아둘만한 신지식' 중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경제지식을 엮은 책이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난해하거나 모순된 현상을 분석해 쉽게 풀이해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책은 '쉽게 풀어쓴 경제학'이라기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新경제학'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최신의 경제 정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소비자, 문화, 투자, 권력, 축구, 행복, 외모, 조직, 일자리, 여자 등 13개의 주제로 진행된 최신 경제학 연구결과를 재미있게 풀어 설명한다.

경제학자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동일한 현상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며 넘어가는 일들도 그들의 분석 방식을 빌리면 의외로 쉽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 센터에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고객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키 큰 사람들의 소득이 1센티미터당 1%씩 더 높은 이유?", "TV를 많이 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 "여성의 월급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 "축구감독을 바꾼다고 팀의 성적이 향상될까?" 등, 사회 곳곳에 숨겨진 비밀과 함정을 밝혀낸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호모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한 전통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깨고 인간과 세상사에서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선 새로운 경제학의 면모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이한 책이다.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의 발견과 적용으로 가능해진 게임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경제학, 인간의 심리와 행위를 해명하는 행위경제학, 신경제학 등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현대 경제학의 흥미진진한 발전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두 저자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주제들을 재미있게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독자를 위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기자적 감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낸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경제학의 현주소'를 매우 신빙성 있고 우아하게 소개하고 있다.

서연이와 한준이의 재미나고 신나는 경제여행

종합출판 범우 발행

김인철 지음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상식을 쉽게 배운다.

"정부는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나라를 지키는 일(=국방)에서부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치안),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과 댐을 건설하는 일,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일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우리 동네에 보도 블럭을 까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 여기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거두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이란다."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세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서연이와 4학년인 한준이네 한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어린이경제 도서이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만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아이들이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자연스레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는, 우리가 현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경제라는 사실, 경제의 원리를 알고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슬기롭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저절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소년 조선일보』에 5년에 걸쳐 인기리에 연재되면서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김인철 선생님의 알기 쉬운 경제' 의 내용과 『매일경제신문』이 발행하는 「틴 매일경제」의 '알기 쉬운 금융' 란에 저자가 기고하였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여 엮었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설명하였고, 제2부에서는 시사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경제원리 편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사경제 편에서는, 미래의 경제주체인 어린이들도 우리나라 경제 · 사회의 움직임은 물론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최근의 경제이슈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KDI 경제정보센터의 김인철 부소장.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오랫동안 경제교육과 정책홍보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얻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이 책을 집필했다.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저자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돋보이는 책이다.

경제상식사전
출판사 길벗 발행
김민구 지음

경제신문 술술 읽고픈 왕초보를 위한 책!

경제신문을 하루종일 봐도 진도가 안 나간다면?
경제신문이 영자신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런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출간되었다. 길벗에서 만든 《경제상식사전》은 경제신문 기자인 저자가 최신 경제이슈를 엄선하여 재기 넘치는 삽화와 최신 도표로 술술 읽히게끔 구성한 책이다.

알쏭달쏭 경제용어, 역사적 배경을 알면 쉬워진다!

경제신문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 때문이다. 인포데믹스, 싱글 이코노미, 추락한 천사, 골디락스 같은 신조어들은 언어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식, 채권, 금리 같은 기초용어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한번쯤 배웠을 법한 보이지 않는 손, 그레셤의 법칙, 분식회계 같은 낯익은 용어들도 그림, 도표들과 함께 구성하여 연상작용을 높여준다. 이제 경제신문을 읽어도 코믹한 일러스트를 떠올리며 키득키득 웃으며 넘겨볼 수 있을 것이다. 길벗의 《경제상식사전》은 가볍게 읽히면서도 기초는 확실히 다져주는 경제 교양서로서 손색이 없다.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핫이슈 총망라!

독자들이 경제입문서를 찾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교양, 취업, 재테크가 바로 그것. 《경제상식사전》은 이런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총 4개의 마당으로 목차를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마당 –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경제상식들
- 둘째마당 – 재테크에 도움되는 금융상식들
- 셋째마당 – 한국경제 핫이슈 따라잡기
- 넷째마당 – 세계경제 시야 넓히기

재정포럼

2008년 2월호 통권 제140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 행 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2월 15일 발행 / 제13권 제2호(통권 제14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